



국제인도법

질문과 답변



ICRC



ICRC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 한국사무소
04535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97 고려 대연각타워 5F
T +82 2 779 5375 F +82 2 779 5376
www.icrc.org / kr.icrc.org
© ICRC, December 2017

Front cover: Boris Heger/ICRC

국제인도법

질문과 답변

감수 : 강병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국제인도법이란?.....	4
2. 개전법과 교전법은 무엇인가?.....	8
3. 국제인도법의 기원은 어디에 있나?.....	11
4. 국제인도법은 어떠한 조약으로 구성되어 있나? 관습국제인도법은 무엇인가?	14
5. 국제인도법은 언제 적용되나?.....	18
6. 제네바협약과 추가의정서는 무엇인가?.....	22
7. 국제인도법의 보호 대상은 누구인가?	26
8. 국제인도법의 구속 대상은 누구인가?	31
9. 국제인도법과 인권법의 차이는 무엇인가?.....	35
10. 국제인도법은 자유의 박탈에 대해 어떤 규정을 갖고 있나?.....	42
11. 적대행위를 규정하는 주요 국제인도법 규칙은 무엇인가?.....	46
12. 국제인도법은 전쟁의 수단과 방법을 어떻게 규제하고 있나?	50
13. 표장의 사용 및 보호와 관련된 국제인도법 조항에는 무엇이 있나?	55
14. 실종자 및 가족 찾기 활동에 대한 국제인도법의 규정은 무엇인가?	59
15. 인도주의적 접근 및 지원에 있어 국제인도법은 무엇을 규정하는가?.....	64
16. 국제인도법은 난민과 실항민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나?.....	68
17. 국제인도법에 따른 특별 보호 대상은 무엇인가?	72
18. 국제인도법의 테러리즘 관련 규정은 무엇인가?	80
19. 국제인도법은 어떻게 이행되나?	84
20. 국제인도법의 발전 및 존중 보장에 있어 ICRC의 역할은 무엇인가?	88
21. 전범 용의자는 국제법에 따라 어떻게 기소되나?	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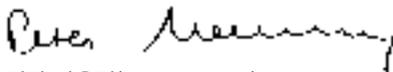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의 상태 개선”을 위한 최초의 제네바협약은 1864년 채택되었으며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HL)의 출발점이 되었다. 그 후 많은 조약이 그 뒤를 이었으며, 이들 조약은 모두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보호하기 위해 마땅히 존중되어야 할 한계 내에서 전쟁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쟁의 성격은 150년 전 최초의 제네바협약이 채택된 이래 몰라볼 정도로 변했다. 최근 들어 무력충돌은 국가 사이에서가 아니라 국가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 오늘날 전쟁의 수단과 방법은 우리 선대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정도로 정교해졌다. 일례로 드론과 같은 무인 무기의 사용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드는 것도 당연하다. 과연 국제인도법은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고 있는가?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의 대답은 ‘그렇다’이다. 국제인도법의 핵심 원칙은 여전히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무력충돌의 변화에 따라 국제인도법도 진화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ICRC는 지난 150년간 활발하게 국제인도법을 강화하고 최신 정세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무력충돌은 계속해서 많은 인명을 앗아가고 있으며 동시에 민간인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다는 점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국제인도법이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는 전투원 및 이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지휘관들이 규칙을 준수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 그래서 ICRC는 국제인도법이 더 잘 지켜지고, 제대로 시행되고 집행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인도적 또는 법적 활동 외에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민간인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제인도법을 지키려는 정치적 의지이다.



피터 마우러(Peter Maurer)
국제적십자위원회 총재



11 JUIN au 6 JUILLET 1906



1. 국제인도법이란?

국제인도법(IHL)은 국가, 국제기구 및 기타 국제법 주체들 간의 관계를 규율한다. 무력충돌 시 인도적 차원에서 적대행위에 가담하지 않거나 더 이상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전쟁의 수단과 방법을 제한하는 규칙으로 구성된 국제공법 분야이다. 다시 말해 국제인도법은 무력충돌의 국제적 또는 비국제적 성격에 상관없이 특별히 무력충돌에서 직접 발생하는 인도적 문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조약 및 관습법(즉, 국가 관행에서 도출되며, 의무감에 근거하는 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ICRC

용어의 정의

‘국제인도법’, ‘무력충돌법 (LAW OF ARMED CONFLICT)’ 및 ‘전쟁법(LAW OF WAR)’은 동의어로 사용될 수 있다. ICRC, 국제기구, 대학 및 국가는 ‘국제인도법’(또는 ‘인도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제네바법과 헤이그법

국제인도법은 크게 두 분야로 구분된다:

- 제네바법 : 전투력을 상실한 군인 및 적대행위에 가담하지 않거나 더 이상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는 민간인 등 무력충돌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칙의 집합체
- 헤이그법 : 적대행위 시 교전자의 권리와 의무를 확립하고 전쟁수단과 방법을 제한하기 위한 규칙의 집합체

제네바법과 헤이그법은 이들이 처음으로 성문화된 도시에서 이름을 따왔다. 두 법을 하나로 묶는 제네바 제협약의 추가의정서가 1977년 6월 8일 채택됨에 따라, 그 구분은 이제 역사적 및 학문적 의미만을 지니게 되었다.

*제네바 제협약 : 1949년 발표된 4개의 제네바협약을 통틀어 칭하는 용어

군사적 필요와 인도(HUMANITY)

국제인도법은 인도(HUMANITY)와 군사적 필요라는 두 가지 기본 원칙을 절충한 것으로, 이 두 가지 원칙이 모든 규칙의 틀을 형성한다.

군사적 필요의 원칙은 총돌의 적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무력의 정도와 종류만을 허용한다. 즉, 최소한도의 생명 손실과 자원 손실로써 최대한 빨리 적을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굴복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국제인도법에서 금지하는 수단의 사용은 허용하지 않는다. 인도의 원칙은 총돌의 적법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모든 고통, 상해, 파괴를 금지한다.

“전쟁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아닌 국가 간의 관계이며,
여기에서 개인은 인간도 아니고, 시민도 아닌 단지 군인으로서 우연히 적이 되는 것이다.
전쟁의 목적은 적국을 격파하는데 있으므로
상대편 전투원이 무기를 손에 들고 있는 한 이를 살해하는 것은 적법한 행위다.
그러나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는 순간 적 또는 적의 도구가 아닌 인간으로
되돌아간 것이므로 그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더 이상 적법하지 않다.”
장자크 루소(1762년)

국제인도법의 핵심 규칙

총돌의 당사자는 항시 민간인과 민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인과 전투원을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민간인은 단체로서든 개인으로서든 공격받아서는 안 되며 공격은 전적으로 군사 목표물에만 국한되어야 한다. 총돌 당사자는 전쟁 방법과 수단을 무제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지 않는다. 무차별적인 전쟁 무기 또는 방법의 사용은 과도한 상해 또는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금지된다.

투항하거나 더 이상 전투에 참가하지 않는 적을 살상하는 것은 금지된다. 따라서 적대행위에 가담하지 않거나 더 이상 가담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그들의 생명과 육체적, 정신적 보전에 대해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이들은 모든 상황에서 그 어떤 불리한 차별을 받아서도 안 되며, 반드시 보호되고 인도적인 대우를 받아야 한다. 의무요원 및 의무시설, 수송수단 및 장비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흰색 바탕 위 적십자·적신월 및 적수정 표장은 보호받아야 할 사람과 목적물을 나타내는 표지이다.

포로가 된 전투원과 적측의 권력 내에 있는 민간인은 그들의 생명, 존엄성, 개인의

권리 및 정치적, 종교적, 그리고 여타의 신념에 대해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이들은 일체의 폭력 및 보복으로부터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가족과 연락을 취하고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모든 형사 소송 절차에서 사법상의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위에서 요약된 규칙이 국제인도법의 핵심사항이다. ICRC는 국제인도법의 증진을 촉진하기 위해 핵심 규칙을 이러한 형태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 문서로서의 권위를 갖지 아니하며 결코 현재 시행 중인 조약을 대체하는 것도 아니다.

“민간인과 전투원은 확립된 기존 관습,
인도의 법칙, 공공 양심의 명령으로부터
수립된 국제법 원칙의 보호와 권한의 적용을 받는다.”
표도르 마르텐스(Fyodor Martens, 1899)

마르텐스 조항(MARTENS CLAUSE)으로 알려진 위의 내용은 육전 법규 및 관습에 대한 제2헤이그협약(1899)의 전문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동 조항은 1899년 헤이그평화회의에 러시아 대표로 파견된 표도르 표도로비치 마르텐스(FYODOR FYODOROVICH MARTENS) 교수가 주도하여 그의 이름을 따서 불린다. 마르텐스 조항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나 일반적으로 ‘국제인도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되고 있다. 교전자는 행위시 언제나 인도의 원칙과 공공 양심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2. 개선법과 교전법은 무엇인가?

개선법(JUS AD BELLUM)은 국가가 전쟁을 수행하거나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에 관한 법이다. 1945년 유엔헌장에 명시된 국가 간 무력 사용 금지와 예외사항(정당방위 및 유엔이 승인한 무력 사용)이 주요 구성 요소이다 (“전쟁 금지에 대하여”를 참조).

교전법(JUS IN BELLO)은 무력충돌에 가담하는 당사자의 행동을 구속한다. 국제인도법은 교전법과 동의어이며 가능한 한 많이 무력충돌의 희생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무력충돌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국제인도법은 충돌의 이유 또는 전쟁 명분의 정당성에 상관없이 교전 당사자들에게 적용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모든 당사자가 침략의 피해자임을 주장하여 인도법의

이행이 불가능할 것이다. 더욱이 국제인도법은 무력충돌의 어느 쪽 당사자인지에 관계없이 무력충돌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이유로 교전법은 개전법과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전쟁 금지에 대하여

제1차 세계대전이 종식되기 전까지 무력 사용은 불법 행위로 간주되지 않았고, 분쟁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용인되었다.

1919년 국제연맹규약 (THE COVENANT OF THE LEAGUE OF NATIONS)과 1928년 파리조약(켈로그-브리안 조약)은 전쟁을 불법으로 규정하고자 했다. 1945년 유엔 헌장이 채택되면서 이러한 경향이 확인되었다. “회원국은 국제 관계에 있어 무력 사용을 위협하거나 무력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유엔 헌장은 다른 국가(또는 국가 연합)의 공격에 대해 개인 또는 집단으로서의 정당방위에 대한 국가의 권리를 지지한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이하 유엔안보리)는 유엔 헌장 제7장을 근거로 활동하며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에 대하여 집단적인 무력 사용을 결정할 수 있다.

국제인도법과 ‘보호책임’

세계보호책임센터(GLOBAL CENTRE FOR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는 2008년 설립되었으며,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R2P)’이라는 개념을 발전시키고 증진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보호책임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보호책임은 국제사회가 집단살해 및 기타 형태의 잔악한 인권유린에 직면하여 반드시 행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원칙이다. 유엔총회 시 열린 2005년 유엔 세계정상회의에서 국가 정상들은 보통약자 “R2P”로 표기하는 보호책임 원칙을 채택했다. 이 원칙은 첫째로 국가는 자국민을 대규모 참화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둘째, 국제사회는 국가의 보호 활동을 지원해야 하고, 셋째, 해당 국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할 경우 더 큰 규모의 국가 공동체가 보호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보호책임은 각국 정상들이 대규모 참화의 위험에 처한 모든 인간에게 한 엄숙한 약속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보호책임의 개념은 국가가 집단살해, 전쟁범죄, 인종청소, 반인도적 범죄 등 네 개의 특정 범죄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명백하게 이행하지 못한 경우 국제사회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동의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이에는 외교, 인도적 조치 및 기타 평화적 수단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마지막 수단으로 무력 사용도 있으나 유엔안보리의 승인 후에만 사용할 수 있다. 보호책임은 때때로 “새로 부상하는 규범(EMERGING NORM)”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국제사회에 구속력 있는 법적 의무를 지우는 것은 아니고, 정치적 장치에 불과하다.

국제인도법은 국제 관계에서의 무력행사를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하는 근거를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국가들이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도 않는다. 국제관계에서 무력 사용의 적법성은 오직 개전법에 의거해 결정된다. 그러나 보호책임을 지탱하는 근거와 국제인도법 준수 의무는 인도법 준수를 확보하여 전쟁범죄 및 기타 국제 범죄 등 인도법의 위반을 예방할 국제사회의 의무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보호책임 맥락에서의 무력 사용은 제네바 제협약에 대한 1977년 6월 8일 자 제1추가 의정서(제1추가 의정서) 제89조에 명시된 바 유엔과의 공동 조치 중 하나로도 볼 수 있다. 제89조는 “협약 또는 해당 의정서의 중대한 위반의 경우 체약국은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유엔과 협력하고 유엔헌장을 준수하여 행동할 것을 약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ICRC는 중립의 기본 원칙에 따라 보호책임을 위한 군사적 개입에 찬성하지도 반대하지도 않는다. 국제사회가 국제인도법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취하는 수단에 대하여 그 어떤 의견도 표명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보호책임 및/또는 국제인도법 준수 확보 의무를 근거로 하는 무력 사용은 반드시 국제인도법과 인권법의 관련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보호책임 작전의 맥락 내에서 무력충돌에 가담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는 항상 국제인도법을 준수해야 한다.

3. 국제인도법의 기원은 어디에 있나?

고대부터 전쟁의 피해로부터 개인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아래 박스 참고)은 계속되어 왔다. 하지만 19세기 후반에 들어서야 무력충돌 피해자의 권리와 보호 등 전쟁을 규제하는 국제 조약이 등장했다.

Frédéric Boissonnas/ICRC



이것이 합의되고 비준된다면, 유럽 여러 나라에서 부상자 구호단체를 설립할 근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뒤푸르(뒤낭에게): “당신이 보고했던 것과 같은 생생한 예를 통해 전장의 승리가 어떤 고문과 눈물을 자아내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뒤낭: “예를 들어 각기 다른 국적을 가진 전쟁 군주들이 특별히 만날 때처럼... 이런 종류의 회의를 활용해 협약에서 승인했기에 성격상 위반할 수 없는 국제적 원칙을 정하면 좋지 않겠는가?”

현대 국제인도법의 창시자는 누구인가?

현대 국제인도법의 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두 인물로 스위스의 기업가 앙리 뒤낭(HENRY DUNANT)과 스위스의 장군 기욤 앙리 뒤푸르(GUILLAUME-HENRI DUFOUR)를 들 수 있다. 1859년 이탈리아를 여행하던 뒤낭은 솔페리노 전투 후의 참담한 광경을 목격했다. 제네바로 돌아온 그는 자신의 경험을 ‘솔페리노의 회상’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엮어 1862년 출간하게 되었다. 전쟁 경험이 있었던 뒤푸르 장군은 최초의 제네바협약이 채택된 1864년 외교회의의 의장을 맡음으로써 즉시 뒤낭의 이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1863년 귀스타브 므와니에(GUSTAVE MOYNIER), 루이 아피아(LOUIS APPIA), 테오도르 모누아(THÉODORE MAUNOIR), 뒤낭, 뒤푸르는 ‘5인 위원회(COMMITTEE OF FIVE)’라는 군 부상자 구호를 위한 국제위원회를 설립했다. 이것이 1876년 국제적십자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가 되었다.

현대 국제인도법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나?

1864년 5인의 ICRC 설립자의 촉구에 스위스 정부는 외교회의를 소집했고, 16 개국이 참석하여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 부상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협약을 채택했다. 이것이 현대 국제인도법의 탄생 계기다.

1864년 협약은 어떤 혁신을 불러왔나?

다자간 조약인 제네바협약은 부상을 입었거나 병든 전투원과 이들을 간호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데, 단편적이고 흩어져 있었던 구 전쟁법과 관습을 성문화하고 강화했다. 협약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 부상을 입었거나 병든 전투원을 보호하기 위한 보편적인 명문화된 규칙
- 모든 국가가 조인할 수 있는 다자간 협약
- 차별 없이(즉 적군과 아군의 구별 없이) 부상 군인과 병든 군인을 치료할 의무
- 의무 요원·수송수단·장비에 대한 존중 및 표장(흰색 바탕에 적십자)을 사용한 이들의 구분

성문화 이전의 국제인도법

1863년 적십자의 설립이나 1864년 최초의 제네바협약의 채택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국제인도법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자체 규칙을 보유하지 않은 사회란 없듯이 애매하든 명료하든 적대행위, 그리고 개전과 종전을 규율하는 규칙이 없는 전쟁은 사실상 없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시부족의 전쟁 행위는 현대에 알려진 국제적 전쟁 규칙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다. 적의 유형을 구분하는 규칙, 개전과 종전에 관한 정황·공식절차·권한을 결정하는 규칙, 사람·시간·장소·행동 방법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는 규칙 및 전쟁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칙 등이 있다.”

퀸시 라이트(Quincy Wright)

최초의 전쟁법은 우리 시대보다 수천 년이나 앞서 공표되었다.

“나는 강자가 약자를 탄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러한 법을 제정한다.”

바빌론의 함무라비왕

마하브라타, 성경, 코란 등 여러 고문서에는 적을 존중하라는 내용의 규칙이 담겨있다. 일례로 아랍 민족의 스페인 지배가 정점에 달했던 13세기 말에 쓰인 비가엣(VIGAYET)에도 전쟁 규칙으로 합당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중세 유럽에서 기사들은 약자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자들을 존중하는 규율인 기사도를 따라야 했다. 이러한 예들은 국제인도법의 보편성을 보여준다.

리버규칙(LIEBER CODE)

전쟁의 시작에서부터 현대 국제인도법이 등장하기까지 적대행위를 규제하는 교전국 간 협정, 행동 강령, 규약 및 기타 문서가 500건 넘게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1863년 4월 발효된 리버규칙(LIEBER CODE)도 있다. 리버규칙은 기존의 전쟁법 및 관습을 성문화하려는 첫 번째 시도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하지만 리버규칙보다 1년 후 채택된 최초의 제네바협약과 달리 미국 내전 중 북부 연방군에게만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조약의 지위는 갖지 못했다.

4. 국제인도법은 어떠한 조약으로 구성되어 있나? 관습국제인도법은 무엇인가?

현대 국제인도법은 1864년 최초의 제네바협약으로 탄생했다. 국제인도법은 무기 기술의 발달과 무력충돌의 성격 변화로 인해 점차 커져가는 인도적 지원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단계적으로 진화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진화는 이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건이 발생 한 후이나 도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다음은 채택 연대순으로 주요 국제인도법 조약을 나열한 것이다.

1864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 부상자의 상태 개선을 위한 제네바협약

1868 세인트피터스버그 선언 (전시에 특정 발사체 사용을 금지함)

1899 육전에 대한 법률과 관습에 대한 헤이그협약, 및 1864년 제네바협약 원칙을
해전에 적용함

1906 1864년 제네바협약의 개정 및 개선

1907 1899년 헤이그협약 개정 및 신헌약 채택

1925 전시 질식성, 독성 또는 기타 가스 및 세균학적 전쟁 수단의 사용을 금지하는
제네바의정서

1929 2개 제네바협약

- 1906년 제네바협약의 개정 및 개선
-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

1949 4개 제네바협약

- I.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 개선
- II. 해상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병자 및 조난자의 상태 개선
- III. 포로의 대우
- IV.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 보호

1954 무력충돌 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헤이그협약

1972 세균(생물학적) 무기 및 독성 무기의 개발, 생산 및 비축 금지와 폐기에 관한 협약

1976 환경 변경 기술의 군사적 또는 기타 적대적 사용의 금지에 관한 협약

1977 1949년 4개 제네바협약에 대한 2개 추가의정서 – 제1추가의정서 : 국제적 무력충돌 피해자 보호, 제2추가의정서 : 비국제적 무력충돌 희생자 보호

1980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재래식무기(CCW)의 사용 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 특정 재래식 무기는 다음을 포함한다.

- 탐지 불능 파편에 관한 제1의정서
- 지뢰, 부비트랩, 기타 장치의 사용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제2의정서
- 소이성 무기의 사용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제3의정서

1989 아동권리협약 (제38조)

1993 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 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1995 실명 레이저 무기에 관한 제4의정서 (1980년 특정재래식무기 협약에 추가)

1996 지뢰, 부비트랩 및 기타 장치의 사용 금지 및 제한에 대한 개정의정서 (1980년 특정재래식무기협약에 대한 제2의정서(개정))

1997 대인지뢰 사용, 비축, 생산, 이전 금지 및 폐기에 대한 협약

1998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1999 무력충돌 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1954년 헤이그 협약에 대한 제2의정서

2000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의 권리 보호 협약에 대한 선택의정서

2001 1980년 특정재래식무기협약 제1조 개정

2003 전쟁 잔류 폭발물에 관한 제5의정서 (1980년 특정재래식무기협약에 추가)

2005 추가적인 고유 표장의 채택에 관한 1949년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의정서 (제3추가의정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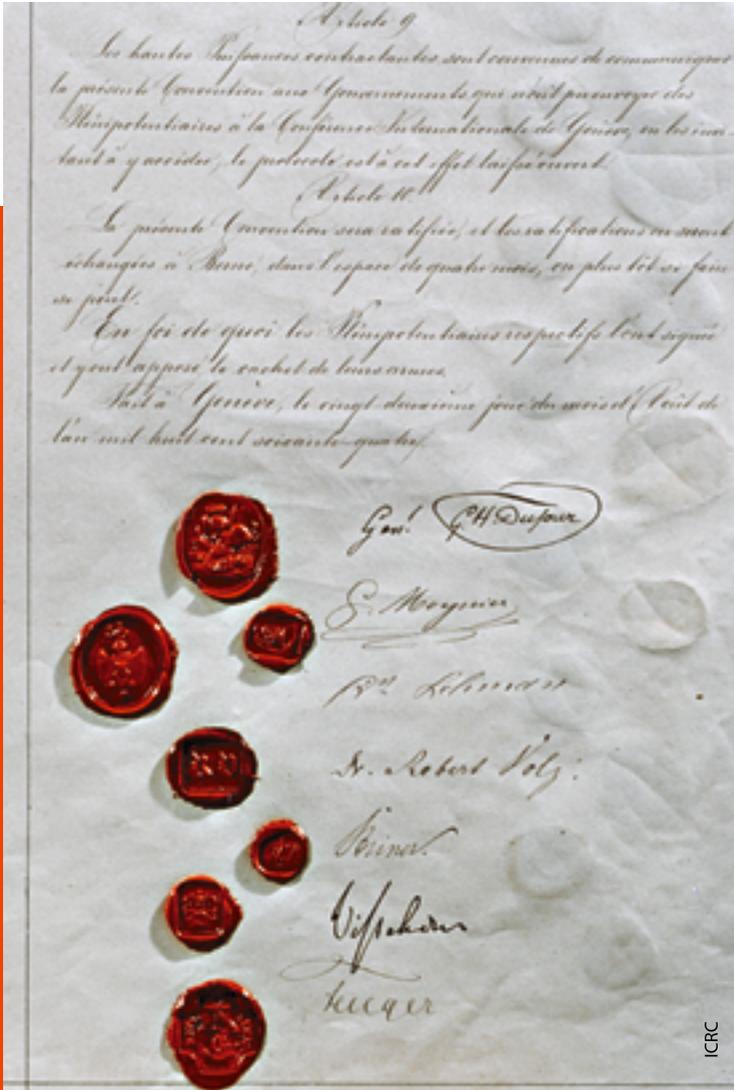
2006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2008 집속탄금지협약

2013 무기거래조약

본 목록은 일부 무력충돌이 국제인도법의 발달에 거의 즉시 영향을 끼쳤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제1차 세계대전(1914-1918) 동안 기존에 있었던 방법을 포함해 다양한 전쟁 방법이 전례 없는 규모로 사용되었다. 독가스가 사용되었고 공습이 최초로 행해졌으며 수십만 명이 포로로 잡혔다. 1925년과 1929년 조약은 이러한 상황 전개에 따라 채택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민간인과 군인 사망자 수 비율이 1:10이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1939-1945)에서는 민간인과 군인 사망자의 수가 같았다. 1949년 국제사회는 이와 같은 충격적인 사상을, 더욱 정확히는 전쟁이 민간인에게 미치는 끔찍한 영향에 대응해 당시 발효 중이던 협약을 개정하고 새로이 민간인 보호를 위한 네 번째 제네바협약을 채택했다.

또한 1949년 4개 제네바협약의 공동 제3조에서 부분적으로만 다루었던 민족 해방 전쟁이 인명 피해를 야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1977년 추가의정서가 채택되었다.

1949년 제네바 제협약과 1977년 추가의정서는 약 600개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서, 국제인도법의 주된 문서가 된다 (질문 6 참조).

관습국제인도법

국제인도법은 주로 조약 채택과 관습법 형성을 통해 국가들이 발전시킨다. 관습법은 국가 실행의 밀도가 충분할 때, 즉 폭넓게 시행되고, 대표성을 띠며, 높은 빈도로 동일한 방식으로 실시되고, 국가들이 법에 따라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거나 하지 않아야 한다는 믿음이 국가 실행에 수반되었을 때 형성된다. 관습은 관행 또는 규칙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이를 지속적으로 반대한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1995년 ICRC는 국제인도법의 관습 규칙에 대한 세부 연구에 착수했다. 연구에는 약 10년이 걸렸으며 2005년 케임브리지대학 출판사에서 연구서가 출간되었다. 연구 내용은 온라인(<https://www.icrc.org/customary-ihl>)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위 연구의 내용을 발전시킨 것이며 크게 제1부와 제2부로 나뉜다.

- **규칙** : 관습국제인도법의 기존 규칙을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는 매우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해당 법 분야의 모든 규칙을 망라하여 평가한 것은 아니다. 이 연구는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로 제공되고 있으며 연구 요약본 및 규칙의 목록은 많은 다른 언어로도 확인할 수 있다.
- **관습** : 제1부에서 분석한 규칙의 근간이 되는 실행을 담고 있다. ICRC가 영국적십자사와 협력하여 정기적으로 보정하고 있다. 근거 자료는 전 세계에서 활동 중인 ICRC 대표단과 국가별 적십자사 및 적신월사가 수집하고 케임브리지 대학의 라우터파르트 국제법센터(LAUTERPACHT CENTRE FOR INTERNATIONAL LAW)의 연구원들이 취합한다.



5. 국제인도법은 언제 적용되나?

국제인도법은 무력충돌 상황에서만 적용된다. 보호에는 두 가지 체제가 있는데, 하나는 국제적 무력충돌, 또 하나는 비국제적 무력충돌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특정 상황에 적용 가능한 규칙은 무력충돌의 분류에 따라 달라진다.

A) 국제적 무력충돌(INTERNATIONAL ARMED CONFLICT, IAC)

국제적 무력충돌은 하나 이상의 국가가 다른 국가에 무력을 사용하는 경우 발생한다. 국가와 국제기구 간의 무력충돌 또한 국제적 무력충돌로 분류된다.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식민 지배 및 외국의 점령, 인종차별적 정권에 대항하는 민족해방전쟁은 특정 조건에서 국제적 무력충돌로 분류된다 (제1추가 의정서 제1조 4항, 제96조 3항 참조). (질문 8 참조)



Ricardo Garcia Vilanova/CRC

B) 비국제적 무력충돌

(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 NIAC)

오늘날 많은 무력충돌이 비국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비국제적 무력충돌은 적대행위가 국가 군대와 조직된 비국가 무장단체 간, 또는 한 국가 내 조직된 무장단체 간에 발생하는 경우이다. 적대행위가 비국제적 무력충돌로 분류되려면 적대행위가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고, 관련 단체 또한 충분히 조직된 상태여야 한다.

국제인도법 관련 조약법은 공통 제3조에서 정의한 비국제적 무력충돌과 제2 추가의정서 제1조에서 정의한 비국제적 무력충돌을 구분하고 있다.

- **공통 제3조**는 “체약국의 영토에서 발생하는 국제적 성격을 띠지 않는 무력충돌”에 적용된다. 여기에는 하나 이상의 조직된 비국가 무장단체가 가담한 무력충돌이 포함된다. 비국제적 무력충돌은 정부 군대와 조직된 비국가 무장단체 간에 또는 비국가 무장단체 간에 발생할 수 있다.
- **제2추가의정서**는 “체약국의 영토에서 발생하는 정부 군대와 반정부 군대 또는 지휘관의 책임 하에 운영되고 국가 영토의 일부분을 차지하여 지속적으로

일치된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고 본 의정서를 이행할 능력을 갖춘 조직된 무장단체”간 무력충돌에 적용된다. (제2추가의정서 제1조 1항 참조) 제2 추가의정서에 따른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정의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공통 제3 조의 비국제적 무력충돌보다 좁은 의미를 가진다.

- 1) 조직된 비국가 무장단체는 “지속적이고 일치된 군사작전을 수행하고 본 의정서를 이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 영토에 대한 지배를 행사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영토 지배를 요건으로 한다.
- 2) 제2추가의정서는 정부 군대와 반정부 군대 또는 기타 조직된 무장단체 간의 무력충돌에만 적용된다. 공통 제3조와는 달리 제2추가의정서는 조직된 비국가 무장단체 간의 무력충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2추가의정서는 “기존 적용 조건을 변경하지 않고” 공통 제3 조를 “발전시키고 보충”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제2추가의정서 제1조 1항 참조) 즉 제2추가의정서의 제한적인 정의는 해당 의정서 적용 시에만 유효함을 의미하며, 일반적인 비국제적 무력충돌법에까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제적 무력충돌과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동시 발생

특정한 상황에서 여러 무력충돌이 동시에 같은 영역 내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무력충돌의 분류와 적용 가능한 법은 교전자 간의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다음을 가정해 보겠다. A 국가는 조직된 비국가 무장단체와 비국제적 무력충돌을 벌이고 있다. B 국가는 조직된 비국가 무장단체의 편을 들며 직접적으로 개입한다. 이때 A 국가와 B 국가는 국제적 무력충돌에 가담하게 되나 A 국가와 조직된 무장단체 간의 무력충돌은 비국제적 성격을 유지하게 된다. 만일 B 국가가 A 국가의 편에서 개입할 경우 A 국가와 조직된 비국가 무장단체, B 국가와 조직된 비국가 무장단체 모두 비국제적 무력충돌을 벌이게 된다.

국제적 및 비국제적 무력충돌에 적용 가능한 주요 규칙

국제적 무력충돌(IAC)	비국제적 무력충돌(NIAC)
4개의 제네바협약	공동 제3조
제1추가의정서	제2추가의정서
국제적 무력충돌에 대한 관습국제인도법	비국제적 무력충돌에 대한 관습국제인도법

비국제적 무력충돌에 대한 규칙은 국제적 무력충돌에 대한 규칙에 비해 세부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 비국제적 무력충돌에 대한 규칙에는 전투원 또는 포로의 지위가 없다. ('전투원' 및 '포로'에 대한 정의는 질문 7 참조) 이는 조직된 비국가 무장단체의 구성원들이 전투에 가담한 경우 국가들이 이들에 대해 국내법에 따른 기소에서 면제시켜 주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 주권과 국가들이 국내 문제를 국제법에 구속받도록 하기를 꺼려한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비국제적 무력충돌 시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은 이미 입증된 바이다. 하지만 국제적 무력충돌 시 적용되는 조약 규칙과 비국제적 무력충돌 시 적용되는 조약 규칙 간의 중요한 차이는, 대개 모든 유형의 무력충돌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관습법 규칙들로 인해 점차적으로 좁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내적 소요 및 긴장 사태에는 어떤 법이 적용되는가?

국내적 소요 및 긴장 사태(예: 폭동 및 고립되고 산발적인 폭력 사태)는 무력충돌에 미치지 않지만 공공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특징으로 한다. 즉, 폭력 수위가 충분히 높지 않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개인이 조직된 무장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무력충돌로 분류되지 않는다.

국제인도법은 무력충돌에 해당하지 않는 폭력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은 인권법(질문 9 참조)과 국내법 규정에 따른다.



6. 제네바협약과 추가의정서는 무엇인가?

1949년 제네바협약의 기원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 부상자의 상태 개선을 위한 제네바협약은 1864년에 채택되었으며 1906년과 1929년에 개정 및 발전되었다. 포로의 대우에 관한 협약 또한 1929년 채택되었다. 1934년 도쿄에서 개최된 제15회 국제적십자회의는 ICRC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한 교전 당사자의 영토 또는 교전자가 점령한 영역에서의 적국 민간인 보호에 대한 국제 협약문을 승인했다.



Catalina Martin-Chico/ICRC

그러나 각국 정부가 협약 채택을 결정하기 위한 외교회의의 소집을 거부함에 따라 협약문에 대한 그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으며, 결국 도쿄 초안에 포함되어 있던 조항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9년이 되어서야 국가들이 국제인도법의 초석이 되는 4개의 제네바협약을 채택했다. 1949년에 채택된 제1, 제2, 제3의 3개 제네바협약이 동일한 주제에 대한 기존 조약의 확장이라면 제4 제네바협약은 무력충돌 시 민간인 보호만을 다룬 첫 번째 국제인도법 조약으로 전혀 새로운 내용을 다뤘다. 이러한 조약을 발전시키고 채택하게 된 원인 중 하나는 제2차 세계대전 동안의 민간인 사망자 수였다.

1977년 추가의정서의 기원

1949년 제네바 제협약은 국제인도법 발전에 있어 큰 진전이었다. 그러나 식민지 해방 후 냉전 동안 내전 및 민족해방전쟁의 발생 빈도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여기에도 적용 가능한 규칙이 필요해졌다. 더욱이 적대행위에 대한 조약 규칙은 1907년 헤이그협약 이후 진화하지 않았다. 제네바협약을 개정할 경우 1949년에 일구어 낸 진전을 무효화시킬 수도 있었기 때문에 제네바 제협약에 대한 추가의정서 형태로 새로운 문서를 채택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1977년 6월에 채택되었다.

2005년 제네바 제협약에 대한 세 번째 추가의정서가 채택되었다. 의정서는 적수정이라고 알려진 흰색 바탕에 세워 놓은 붉은 사각형 형태로 된 추가 표장을 인정하고 있다. 새 표장은 적십자 및 적신월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 가능한 또 다른 표장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정치, 종교 및 기타 암시를 내포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사용 가능한 표장을 만들기 위해 오랜 선별 과정을 걸쳐 새로운 표장의 형태와 이름이 결정되었다. (질문 13 참조)

제네바 제협약과 추가의정서의 내용

제네바 제협약은 적대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거나 더 이상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는 모든 개인 및 모든 부류의 개인을 보호한다.

- 제1협약 :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또는 병자, 그리고 의무요원
- 제2협약 : 해상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병자, 또는 조난자, 그리고 의무요원
- 제3협약 : 포로
- 제4협약 : 민간인, 예컨대
 - 난민을 포함하는 충돌 당사자의 영역 내에 있는 외국 민간인
 - 점령지 내 민간인
 - 민간인 피구금자 및 피억류자
 - 의무요원, 군종요원 또는 민방위 조직

공통 제3조는 비국가 무력충돌 시 최소한의 보호를 제공한다. 일종의 축약된 조약으로서 교전자들이 결코 위반해서는 안 되는 최소한의 규칙이다. 공통 제3조에 명시된 규칙은 관습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박스 참조)

제1추가의정서는 국제적 무력충돌 시 4개 제네바협약이 제공하는 보호를 보완한다. 예를 들어 부상자, 병자, 조난자 및 민간인 의무요원을 보호한다. 또한 실종자를 수색하고 민간인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의무에 대한 규칙을 포함하고 있다. 법적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사항을 보장한다. 또한 제1추가의정서는 민간인 주민을 적대행위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성문화했다.

제2추가의정서는 공통 제3조를 발전시키고 보완하며 정부 군대와 “지휘관의 책임 하에 운영되고 국가 영토의 일부분을 차지하여 지속적이고 일치된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고 본 의정서를 이행할 능력을 갖춘 반정부 군대 또는 기타 조직된 무장단체” 간의 비국제적 무력충돌에 적용된다. (제2추가의정서의 적용 조건은 질문 5 참조) 제2추가의정서는 민간인에 대한 직접 공격, 집단 처벌, 테러 행위, 강간, 강제 매춘 및 성추행, 노예화 및 약탈에 대한 금지를 포함함으로써 공통 제3조에 포함된 최소한의 기준을 뛰어넘는 수준에서 보호를 강화한다. 또한 자유를 박탈당한 개인의 대우에 관한 규칙도 명시하고 있다.

공통 제3조

일 체약국의 영토 내에서 발생하는 국제적 성격을 띠지 아니한 무력충돌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충돌의 각 당사국은 최소한 다음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1) 무기를 버린 전투원 및 질병, 부상, 억류 등 기타 사유로 전투력을 상실한 자를 포함하여 적대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든 경우에 있어 인종, 피부색, 종교 혹은 신념, 성별, 태생, 재산 및 기타 유사한 기준을 근거로 한 불리한 차별 없이 인도적으로 대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상기에 명시된 사람들에 대한 다음의 행위는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어떤 경우에도 금지된다.

- (가) 생명과 신체에 대한 폭행, 특히 모든 종류의 살인, 신체 훼손, 잔혹한 대우 및 고문
- (나) 인질 억류
- (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 특히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대우
- (라) 문명인이 불가결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사법적 보장을 부여하고, 정상적으로 구성된 법원이 사전에 행한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는 판결의 언도 및 형의 집행

2) 부상자 및 병자는 수용하여 간호해야 한다.

-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와 같은 공평한 인도주의 기구는 충돌 당사국에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 충돌 당사국은 특별 협정에 의하여 본 협약의 다른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
- 앞 조항의 적용은 충돌 당사국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7. 국제인도법의 보호 대상은 누구인가?

국제인도법은 민간인과 무기를 버린 전투원 등 무력충돌의 모든 피해자를 보호한다. 국제인도법이 제공하는 보호의 성격은 다양하며 관련 인원이 전투원인지 민간인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국제적 무력충돌

민간인

민간인은 두 가지 상황에서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다. 첫째로 적대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일반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질문 11 참조) 민간인은 전투원(‘전투원’의 정의는 아래 참조)이 아닌 모든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공격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규칙의 유일한 예외는 민간인이 적대행위에 직접적으로 가담하는 경우(예: 적을 상대로 전투한 경우)이다. 이 경우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으나 적대행위에 직접적으로 가담하는 동안에만 그러하다. (질문 11 참조)

둘째로 민간인은 다음의 경우 충돌 당사자의 권력 내에 있을 때 국제인도법에 따라 '피보호자'로 분류된다.

- 해당 적국 국민이 아닌 경우
- 해당 적국의 우방국 국민이 아닌 경우
(단, 두 국가는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가져야 함)
- 중립국 즉 비교전국의 국민이 아닌 경우
(단, 두 국가는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가져야 함)

그러나 점령지에서 중립국 국민은 언제나 보호 대상이다.

위의 근거는 이들 민간인은 이들을 지배하고 있는 국가와 모국이 전쟁 중이거나 모국과 해당 국가 간 외교 관계가 수립되지 않아 더 이상 자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국제인도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적국에 대한 충성심에 기인한 적대 세력의 자의적 행동으로부터 민간인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피보호자인 민간인은 생명, 존엄성, 개인의 권리 및 정치, 종교 및 기타 신념을 존중받을 권리를 갖는다. 고문, 잔인하거나 치욕적인 대우, 체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폭력 및 보복 행위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민간인은 교전국의 군대가 점령한 지역에 있는 경우, 혹은 무력충돌과 관계된 이유로 억류 중인 경우 특히 위험에 처하게 된다. 점령지에서 점령국은 피보호 대상인 민간인에게 식량과 의료물품을 제공할 특별한 의무를 부담한다. 국외 추방 및 강제 이전은 금지된다. 또한 재산의 몰수 또는 압류에 대한 규칙도 있다. 국제인도법은 자유를 박탈당한 민간인을 보호하는 상세한 규칙, 특히 억류 조건, 피구금자가 갖는 사법 및 절차상의 권리, 피구금자의 석방에 대한 규칙을 제공한다. (질문 10 참고)

전투력을 상실한 전투원

비록 전투원은 과도한 상해와 불필요한 고통으로부터 보호받으나 적대행위의 결과로부터는 보호받지 못한다. (질문 12 참조) 따라서 전투력을 상실하지 않는 한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

충돌 당사자 군대의 모든 구성원(의무요원 및 군중 요원 제외)은 '전투원'으로 정의된다. 충돌 당사국의 군대는 자기 부하의 행동에 대해 충돌 당사국에 책임을 지는 지휘관 휘하에 있는 모든 조직된 무장병력, 집단 및 부대로 구성되어 있다. (제1추가규정서 제43조 제1항과 제2항, 그리고 관습국제인도법에 대한 ICRC 연구의 규칙 3과 4를 참조) 일반적으로 여기에는 정규군의 구성원이 포함된다. 또한 민병대 또는 의용대(소위 비정규 군대)뿐만 아니라 조직된 저항운동단체의

구성원까지 포함된다. 제3제네바협약은 제1추가 의정서보다 엄격하며 비정규 군대와 조직된 저항운동단체의 구성원이 포로로 분류되기 위해 충족시켜야 하는 추가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전투원은 적대세력의 권력 하에 놓여 있을 경우, 투항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경우, 또는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을 만큼 부상을 입었거나 병에 걸린 경우 전투력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이들이 적대행위를 하지 않고 탈출 시도를 하지 않는 경우 전투력을 상실했다고 본다. 전투원은 전투력을 상실하는 즉시 이에 상응하는 존중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더욱이 생포, 투항, 집단 항복 및 기타 사유로 전투원이 적의 권력 내에 들어가게 된 경우에는 '포로'의 지위를 누리게 된다. 따라서 적대행위에 직접적으로 가담했다는 이유로 기소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 사실 전투원은 적대행위에 직접적으로 가담하고도 교전 행위에 대한 기소 면제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하지만 전쟁범죄를 범한 경우엔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질문 19 참조)

포로는 인간적 대우와 생명, 존엄성, 개인의 권리, 정치, 종교 등 기타 신념에 대하여 존중받을 권리를 갖는다. 고문, 잔혹하거나 치욕적인 대우 또는 체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폭력 및 보복 행위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국제인도법은 포로를 보호하는 상세한 규칙으로서, 특히 억류 조건, 사법 및 절차상의 권리, 석방 및 본국 송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질문 10 참조)

미국제적 무력충돌

국제인도법은 미국제적 무력충돌 시 특정 부류의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국가가 조직된 비국가 무장단체의 구성원에게 '전투원'의 지위를 주어서, 이들이 적대행위에 직접 가담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통 제3조와 제2추가 의정서는 단순히 적대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거나 더 이상 가담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국제인도법은 민간인과 적대행위에 더 이상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다. 미국제적 무력충돌에는 '전투원' 지위가 없기 때문에 포로 지위 또한 없다. 이는 이러한 충돌 시 전투에 참여한 조직된 비국가 무장단체의 구성원의 행위에 대하여 국내법에 따라 기소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부상자, 병자, 조난자 및 의무요원의 보호

부상자, 병자, 조난자는 지위에 상관없이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다. 부상자, 병자, 조난자를 권력 내에 두고 있는 충돌 당사자는 이들을 반드시 수색, 수용, 간호해야 한다. 의무요원과 의무시설, 의무 수송수단 및 장비는 모든 상황에서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 흰색 바탕에 적십자, 적신월, 적수정은 그러한 사람 및 대상이 반드시 보호받아야 한다는 식별 표지다. (질문 13 참조)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여성과 아동

여성과 아동 등 특정 부류의 사람들은 무력충돌 시 특별한 필요를 갖기 때문에 각별하게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아동은 이들이 필요로 하는 보살핌과 지원을 받아야 한다. 15세 미만 아동이 적대행위에 직접 가담하는 것을 방지하고 무력충돌로 인해 고아가 되었거나 가족과 떨어지게 된 경우 자력으로 살아가게 방지되지 않도록 활용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들의 부양, 종교생활 및 교육은 어느 경우에도 용이해야 한다.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은 가족 단위 수용시설을 제외하고 성인과 분리된 숙소에 수용해야 한다. 또한 범행 당시 나이가 18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사형이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

무력충돌 피해 여성에게 특별히 필요한 보호, 보건, 및 지원 또한 고려해야 한다. 임신부와 미성년 모는 각별한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 성폭력 금지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나 무력충돌 시 발생하는 성폭력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여성은 모든 형태의 성폭력으로부터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가족단위 수용의 경우를 제외하고, 자유를 박탈당한 여성은 남자와 분리된 곳에 수용되어야 한다. 또한 여성은 남성이 아닌 여성의 직접 감독 하에 놓여야 한다.

지위에 상관없는 기본권 보장

위에 명시된 보호 외에도 국제인도법은 지위에 상관없이 전투력을 상실한 모든 자에게 적용되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제1추가의정서 제75조, 제2추가의정서 제4조).

이러한 자들의 신체, 명예, 신념, 종교행위는 존중받아야 한다. 다음의 행위는 그 행위자가 민간인 대리인이든 군사 대리인이든 불문하고 금지된다.

가) 인간의 생명, 건강 및 신체적 또는 정신적 안녕에 대한 폭력행위 특히,

- 살인
- 모든 종류의 신체적 및 정신적 고문
- 체벌
- 신체

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 특히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대우, 강간, 강제 매춘 및 성추행

다) 인질 억류

라) 집단적 처벌

마) 상기 행위 중 어느 것을 행하겠다는 위협

마지막으로 모든 무력충돌 피해자에 제공되는 기본적 권리 보장은 특정 절차 및 사법상의 안전장치도 포함한다 (제1추가의정서 제75조, 제2추가의정서 제6조).



8. 국제인도법의 구속 대상은 누구인가?

국가, 조직된 비국가 무장단체 등 모든 무력충돌 당사자는 국제인도법의 조약 및 관습 규칙에 구속된다. 관습국제인도법의 규칙은 국제인도법 조약 비준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당사자에게 항상 적용된다.

국가와 그 의무

제네바협약과 추가의정서와 같은 국제 조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주체는 국가로 한정된다. 2013년 11월 기준, 195개 국가가 제네바 제협약의 당사자가 되었고 제네바 제협약이 거의 모든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비준되었다는 사실은 그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2014년 3월 기준, 173개국이 제1추가의정서의 당사자가 되었고, 제2추가의정서는 167개국, 제3추가의정서는 66개국이 당사자가 되었다.

조직된 비국가 무장단체와 그 의무

조직된 비국가 무장단체는 해당 단체가 속한 국가가 관련 조약의 당사자일 경우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당사자로서 공통 제3조와 제2추가의정서에 구속된다 (적용 요건이 충족될 경우 - 질문 5 참조). 또한 모든 경우에서 비국제적 무력충돌에 관한 관습국제인도법 규칙에 구속된다.

민족해방운동 단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식민 지배 및 외국의 점령, 인종차별적 정권에 대항하는 인민을 대표하는 민족해방운동 단체는 수탁자인 스위스 연방정부에 일방적 선언의 방식으로 제네바 제협약 및 제1추가의정서(즉, 국제적 무력충돌에 관한 국제인도법)를 적용하기로 약정할 수 있다 (제1추가의정서 제1조 4항, 제96조 3항).

국제인도법은 유엔이 실시하거나 유엔의 후원 하에 이루어지는 평화작전에도 적용되나?

평화작전의 다면적인 성격과 점점 더 까다롭고 폭력적으로 변하는 활동 환경으로 인해 평화작전을 수행하는 다국적군이 무력 사용에 가담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경우 국제인도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은 매우 타당하다.

다국적군에 대한 국제인도법 적용 가능성 문제는 오랫동안 외면받아 왔다. 유엔군은 무력충돌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따라서 국제인도법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이 종종 제기되었다. 또한 사람들은 무력충돌 시 국제적 합법성의 상징인 다국적군의 유일한 관심사는 국제 평화와 안전의 회복과 보전이므로 다국적군은 공평하고 객관적이며 중립적이라고 여겨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오랫동안 이어져온 개전법(jus ad bellum)과 교전법(jus in bello)의 구분이 무색해진다. 다른 자에게 적용될 때와 마찬가지로, 다국적군에 대한 국제인도법의 적용 여부는 유엔안보리가 다국적군에 부여한 국제적 임무에 상관없이 그리고 다국적군과 대적할 수 있는 당사자를 어떻게 표시하든 오직 사실을 바탕으로 결정해야 한다.

국제인도법은 다국적군이 국제적 및 비국제적 성격에 상관없이 무력충돌의 당사자가 될 경우 적용된다. 다국적군이 정부군에 대항하여 싸울 경우 참조할 법규범은 국제적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국제인도법이다. 하나 이상의 조직된 비국가 무장단체와 싸울 경우, 참조할 법규범은 비국제적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국제인도법이 될 것이다.

평화유지 작전과 평화집행 작전

평화작전은 평화유지와 평화집행 두 가지로 종종 구분한다.

평화유지 작전의 목적은 정전 및 분계선이 지켜지도록 보장하고 군대 철수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지난 몇 년간 평화유지 작전의 범위가 확대되어 선거 감독, 인도적 구호물품 전달, 국가화해 과정 지원 제공 등 다른 활동도 포함하게 되었다. 평화유지군의 구성원은 자기방어를 위해서만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평화유지 작전은 관련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수행할 수 있다.

반면 평화집행 작전은 유엔헌장 제7장에 따르며, 관련국의 요청을 받거나 유엔안보리의 승인이 있을 시, 유엔군 또는 개별 국가, 다수의 국가, 또는 지역 기구가 수행한다. 평화집행군은 전투 임무를 부여받기 때문에 임무 수행을 위하여 강제적인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 관련 당사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평화작전 시에는 평화유지 작전과 평화집행 작전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근 몇 년 동안 평화작전을 위의 두 가지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현재는 더욱 일반적인 용어인 '평화지원작전' 및 '평화작전'을 더 자주 사용하고 있다.

평화작전 임무의 성격과 명칭(평화유지 또는 평화집행)은 국제인도법 적용 여부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국제인도법 적용 여부는 관련 국제인도법 조항, 특히 공통 제2조와 3조에서 유래한 무력충돌 기준의 충족 여부와 사실에 기반해서만 결정된다.

국제인도법 존중 및 존중 보장을 위한 의무

국제인도법에 따라 의무를 지는 것은 무력충돌 당사자뿐만이 아니다. 모든 국가 그리고 국제사회 전체 또한 국제인도법을 “존중하고 존중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 문구는 “체약국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본 협약을 존중할 것과 본 협약이 존중받도록 보장할 것을 약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공통 제1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1추가의정서 제1조 1항도 참조)

국제인도법을 존중하고 존중받도록 보장할 충돌 당사자의 의무는 관습국제인도법에도 존재한다. (ICRC의 관습국제인도법에 대한 연구의 규칙 139 참조)

- “존중한다”는 것은 국제인도법 조약 당사자들이 이들 조약을 성실하게 적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 “존중받도록 보장한다”는 것은 더욱 넓은 의미를 갖는다. 충돌 가담 여부와 상관없이 국제인도법 조약의 당사국 및 국제사회 전체는 모든 이들, 특히 충돌 당사자들이 국제인도법 규칙을 존중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함을 의미한다.

제네바 제협약과 추가의정서에 대한 지식을 확산시킬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

제네바 제협약과 추가의정서에 대한 지식을 확산시킬 법적 의무는 국가에 있다.

“체약국은 전시에서와 같이, 평시에도 본 협약 본문을 가급적 광범위하게 자국 내에 보급시킬 것이며 특히 군 교육계획, 가능하면 민간교육계획에도 본 협약에 관한 학습을 포함시킴으로써 본 협약의 원칙을 전 국민, 특히 전투 중인 군인, 의무요원 및 군중요원에게 습득시키기로 약정한다.” (제1제네바협약의 제47조, 제2제네바협약의 제48조, 제3제네바협약의 제127조와 제4제네바협약 제144조 또한 참조)

“체약 당사국은 무력충돌 시와 같이 평시에도, 제네바 제협약과 본 의정서를 각기 자국 내에서 가급적 광범위하게 보급하고 특히 자국의 군사교육계획 속에 이에 관한 학습을 포함시키고 민간의 학습 또한 장려함으로써 동 협약 및 의정서를 군대 및 민간인에게 습득시키기로 약정한다.” (제1추가의정서 제83조)

“본 의정서는 가능한 광범위하게 보급되어야 한다.” (제2의정서 제19조)

9. 국제인도법과 인권법의 차이는 무엇인가?

국제인권법은 무엇인가?

인권법은 조약 또는 관습에 의해 수립된 일련의 국제적 규칙으로, 이를 근거로 개인과 단체는 국가가 존중하고 보호해야만 하는 특정 권리를 기대하거나 주장할 수 있다. 또한 국제인권기준은 수 많은 조약에 기반하지 않는 원칙과 지침(연성법)을 포함한다.

인권법에 대한 주요 조약은 다음과 같다.

가) 보편적 규정

-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1948)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1965)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1979)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1984)
- 아동권리협약(1989)
-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1999)
-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2006)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2006)

나) 지역별 규정

- 유럽 인권협약(1950)
- 미주 인권협약(1969)
- 인간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1981)

이러한 조약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위한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 FOR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및 유럽 인권협약에 대한 유럽 인권 재판소(EUROPEAN COURT FOR HUMAN RIGHTS FOR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등 인권기구가 감독하고 있다.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은 개별적으로 발달해 왔으나 일부 인권 조약은 국제인도법에서 파생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과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및 강제실종협약을 예로 들 수 있다.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은 일부 동일한 목표를 공유하며 서로를 보완하는 국제법체계이다. 국제인도법과 인권법은 비록 그 관점은 다르나 모두 개인의 생명, 건강, 존엄성을 보호하고자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규칙의 존재 형식이 매우 다르나 그 규칙의 핵심은 유사하다. 예를 들어 국제인도법과 인권법 모두 고문 또는 잔인한 대우를 금지하고 형사 기소 중인 자에 대한 기본권을 명시하며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여성과 아동의 보호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고 식량권과 건강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그 기원, 적용 범위, 이행 기구 등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

기원

국제인도법의 기원은 아주 오래되었으나, ICRC의 설립자인 앙리 뒤낭의 영향을 받아서 19세기 후반에 들어서 성문화되었다. (질문 6 참조) 반면 인권법은 조금 더 최근에 만들어진 법체계이다. 그 기원은 특정 계몽운동(예: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 1789년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에 관한 권리 선언)의 사상에서 영향을 받은 국가인권선언에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야 유엔의 후원 하에 국제법의 일부로 인권법이 등장하게 되었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은 국제적 수준에서 구속력을 갖지 않는 유엔 총회 결의안에서 인권법을 최초로 정의했다. 1966년이 되어서야 이 선언이 보편적인 인권조약인 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그리고 1966년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담기게 되었다. (박스 참조)

시간적 적용 범위

국제인도법이 오로지 무력충돌 시에만 적용되는 반면(질문 5 참조), 인권법은 원칙적으로 항시, 즉 평시와 무력충돌 시 모두 적용된다. 그러나 국제인도법과 달리 일부 인권조약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공적인 위기 상황시 정부의 특정 의무를 해제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의무 해제(derogation)는 위기상 반드시 필요한 것이어야 하고, 위기에 비례해야 하며 차별적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고 국제인도법 조항을 포함한 다른 국제법 규칙을 위반해서도 안 된다. 또한 생명권, 고문 또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치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의 금지, 노예화 금지, 소급적 형사법 금지 등 일부 인권의무는 해제될 수 없다.

지리적 적용 범위

국제인도법과 인권법의 또 다른 큰 차이는 역외 적용 여부이다. 국제인도법의 목적이 상대방의 영역에서 무력충돌에 가담하는 하나 혹은 그 이상 국가의 행위를 규율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국제적 무력충돌을 규율하는 국제인도법의 역외 적용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같은 추론이 역외적 요소가 있는 비국제적 무력충돌에도 적용된다. 해당 충돌이 단일 국가 영역을 넘어서게 될 경우 충돌 당사자는 국제인도법 의무에서 면제될 수 없다. 몇몇 중요한 반대 의견이 존재하지만, 인권법은 그중에서도 지역재판소와 국제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역외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이러한 적용의 정확한 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인권 기구들은 일반적으로 국가가 어느 영역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예: 점령) 하거나 또는 사람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예: 구금) 할 때 인권법의 역외적용을 수긍한다. 그러나 무력사용에 관한 인권 규범의 역외 적용에 대한 인권 판례법은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

인적 적용 범위

국제인도법의 목적은 적대행위에 가담하지 않거나 더 이상 가담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국제인도법은 민간인, 그리고 부상자, 병자, 조난자 등 전투력을 상실한 전투원 또는 포로를 보호한다. (질문 7 참조) 반면 주로 평시를 위해 개발된 인권법은 국가의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국제인도법과 달리 전투원과 민간인을 구분하지 않으며 ‘피보호자’의 범주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국제인도법 및 인권법에 구속받는 당사자

국제인도법은 모든 무력충돌 당사자를 구속하며, 국가와 비국가의 행위로 피해를 입는 모든 이들을 위해 국가 쪽과 비국가 쪽에 권리와 의무를 공정하게 부가한다 (기본적으로 ‘수평적’ 관계). (질문 8 참조) 반면 인권법은 국가와 그 국가 영역 내에 존재하고/하거나 그 관할권에 속하는 사람 간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기본적으로 ‘수직적’ 관계), 다양한 행동에 걸쳐 국가의 개인에 대한 의무를 제시한다. 따라서 인권조약과 기타 인권 기준의 출처가 비국가 무장단체에게 법적 의무를 부가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인권법은 국가만 구속한다. 그 이유는 이들 단체는 대부분이 정부와 달리 인권 규범 이행의 전제가 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없어 인권법에 따른 모든 의무를 준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비국가 무장단체에 대한 이러한 일반적 견해도 주목할 만한 예외가 있다. 영역을 안정적으로 지배하는 단체는 국가처럼 행동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따라서 해당 단체의 인권에 대한 책임이 사실상 인정될 수 있다.



실질적인 적용 범위

일부 실질적인 규칙은 국제인도법과 인권법에 공통적으로 등장(예: 고문의 금지)하고 있으나 전혀 달리 규정되기도 한다. 국제인도법은 '전투원'과 '포로'의 지위, 적십자 및 적신월 표장의 보호, 특정 무기의 적법성 등 인권법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은 많은 문제를 다루고 있다. 마찬가지로 인권법도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투표권, 쟁의권 등 국제인도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삶의 측면들을 다루고 있다. 게다가 국제인도법과 인권법이 모두 규율하지만, 그 방식이 다르거나 정반대인 경우도 있다. 특히 이러한 예가 무력 사용 및 구금의 경우이다.

- 무력 사용과 관련하여 적대행위에 대한 국제인도법 규칙은 전쟁 수행 시 살상용 무력이 사용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군사작전의 궁극적인 목적은 적의 군대를 이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력충돌의 당사자는 적군을 포함하여 상호 간에 군사 목표물을 공격하는 것이 허용되거나, 또는 적어도 이러한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는다. 그 주체가 국가이든 무력충돌의 비국가 당사자이든 이와 상관없이 이러한 목표물에 대한 폭력은 국제인도법에서 금지하지 않는다. 그에 반해 국제인도법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적대행위의 여파로부터 민간인과 민간 물자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인 및 민간 물자에 대한 모든 폭력 행위 및 무차별적인 공격은 불법이다. 또한 국제인도법에 따라 민간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주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질문 11참조) 인권법은 국가의 학대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인권법은 충돌 당사자들 간의 적대행위가 아닌 법집행 시 무력 사용 방식을 규제한다. 법집행은 '사살보다는 생포'를 중시하는 접근 방식에 입각하고 있다. 무력 사용은 다른 수단이 효과가 없거나 의도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 생명 보호의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하며 달성하고자 하는 합법적 목표에 철저히 비례해야 한다(예: 범죄 예방, 범죄자 또는 용의자의 합법적인 체포 및 그 지원, 치안 및 안전 유지).

- 구금과 관련하여 국제인도법과 인권법 모두 피구금자의 인간적 대우, 구금 조건,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규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억류 절차상 안전장치(예: 개인의 행동이 구금 당국의 안전에 미치는 위협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에 따라 해당 개인을 비행사적으로 구금함)에서 차이가 있다. 억류는 무력충돌 중 금지되지 않으며, 국제인도법에서는 일반적으로 구금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사법 심사를 하지 않는다. (질문 10 참조) 무력충돌 영역 밖에서의 비행사적(즉 행정상) 구금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대부분의 경우

범죄행위의 용의자일 때 자유를 박탈당하게 된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개인의 신체적 자유를 보장하며 이유를 불문하고 억류된 모든 개인은 구금의 적법성에 관한 사법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분야의 인권법은 법원이 제 기능을 하고 있으며, 사법체계가 그 수에 상관없이 항시 체포된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으며, 법률대리인을 이용할 수 있고, 법 집행관이 업무 수행 능력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무력충돌 시 상황은 매우 다르며 이러한 점이 국제인도법의 조항에 반영되어 있다.

적어도 국제적 무력충돌 시, 무력 사용 및 억류 절차상 보호장치에 대한 국제인도법과 인권법 간의 상호작용은 이러한 두 영역을 다루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국제인도법 조항인 특별법(*lex specialis*)을 참고하여 해결해야 한다. (박스 참조)

국제인도법과 인권법의 상호 작용

국제인도법과 인권법의 상호작용은 특히 군사작전 수행의 효과로 인해 법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는 사안이다.

1996년 핵무기 위협 및 사용의 적법성에 대한 권고적 의견에서 무력충돌 상황에서의 인권 적용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에서 명시하는 보호는 전시에도 중단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자의적으로 생명을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도 적대행위 시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한 자의적 생명 박탈에 해당하는 행위는 적대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고안된 관련 특별법, 다시 말해 무력충돌 시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와 같은 언급은 일반적으로 국제인도법과 인권법의 상호작용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석되고 있으며 항시 적용된다고 여겨지는 인권법은 일반법(LEX GENERALIS)에 해당하고 무력충돌 발생 시 적용되는 특별법(LEX SPECIALIS)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되어 왔다. 다시 말해 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이 충돌하는 경우 국제인도법이 특별히 무력충돌 문제를 다루기 위해 고안되었기 때문에 국제인도법이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특별법 우선 원칙의 의미와 심지어 그 원칙의 유용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나 국제인도법과 인권법의 상호작용을 결정하는데 있어 그러한 원칙이 필수적이란 의견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비록 전반적으로 국제인도법과 인권법이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갖긴 하나 이러한 상호보완성이 때때로 발생하는 상호작용의 복잡한 법적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못한다. 국제인도법과 인권법 규칙은 처음 개발된 정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두 법을 동일한 사실에 적용할 경우 때때로 상반되는 결과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다.



10. 국제인도법은 자유의 박탈에 대해 어떤 규정을 갖고 있나?

국제인도법은 적대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거나 더 이상 가담하지 않는 모든 이들을 보호한다(질문 11 참조). 전투력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일반적인 보호 외에도 국제인도법은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을 특별히 보호한다. 이러한 조항은 해당 무력충돌의 유형과 구금된 사람의 지위에 따라 달라진다.



국제적 무력충돌 시 포로

포로는 생포된 전투원을 말한다(질문 7 참조). 포로의 억류는 처벌이 아니라 이들이 앞으로 충돌에 가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이다. 적극적인 적대행위가 끝난 후 포로는 지체 없이 석방되어 본국으로 송환되어야 한다. 구금 당국은 포로가 범한 전쟁범죄 또는 기타 국제인도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이들을 기소하고 구금할 수 있으나 적대행위에 직접 가담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소하고 구금할 수는 없다. (억류와 구금의 차이는 박스 참조)

포로는 모든 상황에서 인간적인 대우를 받아야 한다. 국제인도법에 따라 모든 형태의 폭력뿐만 아니라 협박, 모욕, 및 대중의 호기심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포로는 생명, 존엄성, 개인의 권리, 정치, 종교 및 기타 신념에 대하여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국제인도법은 숙소, 식량, 의복, 위생 및 간호 등 최소한의 구금 조건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포로는 가족들과 소식을 교환할 권리를 갖는다.

국제적 무력충돌 시 민간인 피억류자

충돌 당사자는 긴급한 안전상의 사유로 정당화될 경우 민간인을 억류할 수 있다. 억류는 안전 조치이며 처벌의 한 형태로 사용될 수 없다. 이는 억류가 필요했던 사유가 사라지면 즉시 피억류자를 석방해야 함을 의미한다.

절차상 안전장치와 관련해 민간인 피억류자는 억류 사유를 통지받고 가능한 신속히 적절한 법원 또는 행정기관에서 결정을 재심사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억류 결정이 유지될 경우 정기적으로 그리고 최소한 연 2회씩 재심사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민간인 피억류자에 대한 대우 및 구금 조건은 포로의 대우 및 구금 조건과 비슷하다(위 참조). 민간인 피억류자는 모든 상황에서 인간적 대우를 받아야 한다. 국제인도법에 따라 모든 종류의 폭력뿐만 아니라 협박, 모욕, 대중의 호기심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생명, 존엄성, 개인의 권리, 정치, 종교 및 기타 신념에 대하여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국제인도법은 숙소, 식량, 의복, 위생 및 간호 등 최소한의 구금 조건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민간인 피억류자는 가족들과 소식을 교환할 권리를 갖는다.

비국제적 무력충돌 시 자유를 박탈당한 자

공동 제3조는 비국제적 무력충돌 상황에서 구금된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불리한 차별 없이 인간적인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모든 필수적인 사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규정하고 있다. 공동 제3조는 제2 추가의정서 제4조, 제5조, 제6조에 의해 보완된다. 해당 조항에서는 1) 기본권 (예: 인간의 생명, 건강 및 신체적 또는 정신적 안녕에 대한 폭력행위 금지), 2)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억류 혹은 구금되어 자유가 제한된 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예: 여성은 남성과 분리하여 구금해야 하며, 또한 여성은 남성이 아닌 여성의 직접 감시하에 있어야 함), 3) 무력충돌 관련 형사 범죄에 대한 기소 및 처벌에 직면한 자의 보호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 조항은 공동 제3조와 마찬가지로 국가 및 조직된 비국가 무장단체를 동일하게 구속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동 제3조와 마찬가지로 제2추가의정서는 군대의 구성원 또는 적의 권력하에 떨어진 무장단체의 구성원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다. 비국제적 무력충돌에는 포로 지위가 없다. (질문 7 참조)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에게 최소한의 보장을 규정하는 조항이 매우 중요하다.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에 대한 보호는 국제적 무력충돌 시에 비해서 비국제적 무력충돌 시 덜 구체적이고 덜 명확하다. 국제인도법 조항도 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된 것이 더욱 많다. 예컨대 비국제적 무력충돌 시 중요한 구금 조건에 대한 규칙은 세부적이지 않으며 피억류자에 대한 절차상 안전장치도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ICRC는 비국제적 무력충돌 시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에 대한 보호를 국제인도법에서 강화가 필요한 영역으로 보고 있다. (질문 20 참조)

무력충돌 시 발생하는 장기 구금은 억류(즉, 안전상의 이유로 인한 행정 구금)와 형사 소송 절차를 목적으로 하는 구금, 이 두 가지가 있다.

- **억류**는 국제인도법에서 구금 당국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여겨지나 그에 대하여 형사소송을 제기할 의도가 없이 구금하는 것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 **구금**은 형사 소송 절차상 최종 유죄 선고 또는 무죄 석방 전까지 형사 용의자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다.

인질 억류

인질 억류, 즉 사람(인질)의 체포 또는 구금 후 인질 석방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조건으로 제3자가 어떤 행위를 하거나 혹은 행동을 자제하지 않으면 해당 인질을 살해, 상해, 또는 계속 구금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11. 적대행위를 규정하는 주요 국제인도법 규칙은 무엇인가?

무력충돌 당사자가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방법, 즉 적대행위를 규율하는 데에는 세 가지 기본 규칙이 있다. 바로 구별, 비례, 사전 주의에 대한 규칙이다. 이들 규칙은 적대행위의 영향으로부터 민간인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들 규칙 외에도, 과도한 상해 또는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전투원과 기타 합법적 공격 대상을 보호한다. 이들 규칙은 제1추가규정서에 뚜렷이 성문화되어 있으며, 국제적 및 비국제적 무력충돌에 대한 관습국제법 내에 존재한다.



구별

구별의 기본 규칙에 따르면 무력충돌의 당사자는 항상 민간인 및 민간 물자와 전투원 및 군사 목표물을 구분해야 한다. 무력충돌의 당사자는 전투원 또는 군사 목표물만 공격할 수 있다. 단체로서 그리고 개인으로서의 민간인은 적대행위에 직접 가담하거나 그러한 기간 중에만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박스 참조). 공격은 군사 목표물로만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하며 민간 물자는 공격할 수 없다. 대상으로서 군사 목표물은 그 성질, 위치, 목적 또는 용도상 군사적 행동에 유효한 기여를 하고, 당시의 지배적 상황에 있어 목표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파괴, 생포 또는 무력화가 확실한 군사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제한한다. 일반적인 군사 목표물은 적 전투원, 군수품 및 무기가 있는 시설, 건물 및 위치 그리고 군사 수송 및 통신 수단이다. 민간 물자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예: 무기 및 전투원을 수송하기 위해 민간 열차 사용) 해당 물자는 군사 목표물로 간주된다.

무차별 공격의 금지는 구별의 원칙에서 파생되었다. 무차별 공격은 다음을 포함한다.

- 특정 군사 목표물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공격 (예: 군인이 특정 군사 목표물을 조준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총기를 발사하여 민간인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경우)
- 특정 군사 목표물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전쟁 방법 또는 수단을 사용하는 공격 (예: 목표물을 정확하게 조준할 수 없는 장거리 미사일)
- 그 효과를 제한할 수 없는 전쟁 방법 또는 수단을 사용하는 공격 (예: 건물 하나를 파괴하기 위해 10톤짜리 폭탄을 사용하는 경우)

비례

전투원 또는 군사 목표물에 대한 공격은 비례의 원칙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이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소기의 군사적 이익에 비해 우발적인 민간인 인명 손실, 민간인 부상 및/또는 민간 물자의 손실이 과도할 여지가 많은 공격의 개시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평가를 통해 민간인 손실이 소기의 군사적 이익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다다랐을 때만 군사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다.

사전 주의

무력충돌 당사자는 군사 작전 수행 시 민간인 및 민간 물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공격을 행하는 당사자는 공격 목표가 군사적 목표물임을 확인하기 위해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민간인과 민간 재산에 대한 우발적 피해를 예방하거나 적어도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공격 수단 및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공격으로 인한 손실 또는 피해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소기의 군사적 이익에 비해 과도할 것이 분명하다면 공격을 개시하지 말아야 한다. 상황이 허용하는 한, 민간인 대중에게 영향을 미칠 공격에 관하여 효과적으로 경고해야 한다. 공격 효과에 대해서도 사전 주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예를 들어 군사 목표물은 가능한 한 민간인 대중 및 민간 물자 주변에 위치해서는 안된다. 또한 기타 필요한 모든 사전 주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과도한 상해 또는 불필요한 고통의 유발 금지

과도한 상해 또는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하는 무기, 발사체 및 전쟁 물자와 방법의 사용은 금지된다. 이는 전투원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데, 특정 종류의 무기는 전투원에게 용인할 수 없는 해를 가하기 때문에 금지된다. 본 규칙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있으나 어느 무기가 과도한 상해 또는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 충돌이 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불필요한 고통을 “합법적인 군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한 고통보다 더 큰 위해”로 정의했다(핵무기 위협 및 사용의 합법성에 관한 권고적 의견, 1996). 예를 들어 특정재래식무기(CCW)에 대한 협약의 제4 의정서에 명시되었듯이, 병사의 눈을 레이저로 조준하여 영구적인 실명을 고의로 야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칙은 이러한 방식이 과도한 상해 및 불필요한 고통에 해당한다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다.

적대행위에 대한 직접 가담

민간인은 적대행위에 직접 가담했을 때와 가담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공격으로부터 보호받는다. 이것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를 분명하게 하고자 ICRC는 전문가 회의를 여러 차례 갖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2009년 ICRC는 관련 논의를 바탕으로 ‘적대행위 직접 가담에 대한 국제인도법 해석 지침(INTERPRETIVE GUIDANCE ON THE NOTION OF DIRECT PARTICIPATION IN HOSTILITIES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을 출간했다. 이 해석 지침(INTERPRETIVE GUIDANCE)은 민간인이 무력충돌 당사자들 사이에서 적대행위의 일환으로 특정 행동을 했을 경우 그는 적대행위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적대행위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중첩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1. 행동이 특정한 위해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이는 행동이 교전 당사자의 군사작전 또는 군사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민간인을 살상하거나, 전원의 전투력을 상실시키거나, 민간 물자를 파괴하는 행동도 포함된다.
2. 해당 행동과 그 행동으로 야기되거나, 그 행동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통합군사작전으로 야기될 수 있는 위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3. 적대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는 그 행동이 한쪽 교전 당사자를 지원하고 다른 교전 당사자에게는 타격을 주는데 필요한 수준의 위해를 직접 유발하기 위해 고안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간인이 이러한 행동을 계속하는 한 적대행위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간주되어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 더욱이 적대행위 직접 가담에 해당하는 특정 행동의 실행 준비뿐만 아니라 실행 위치로의 전개 및 실행 위치에서의 귀환 역시 적대행위에의 직접 가담에 포함된다.

12. 국제인도법은 전쟁의 수단과 방법을 어떻게 규제하고 있나?

총돌 당사자가 전쟁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할 권리에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국제인도법은 무차별적이거나 과도한 상해 또는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하는 전쟁 수단과 방법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질문 11) 전쟁 수단(무기)에 대한 특정 제한/금지 및 전쟁 방법에 대한 금지는 이러한 원칙에서 도출된 것이다.

전쟁 수단

무력총돌 시 특정 무기의 사용은 전면 금지될 수 있으며 무기 그 자체가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 (예: 대인지뢰, 집속탄, 화학무기). 그렇지 않은 경우 이러한 무기의 사용이 특정 상황에서 제한된다 (예: 민간인 밀집 지역에 위치한 군사 목표물에 대한 공중살포 소이성 무기의 사용 금지).

대인지뢰

대인지뢰의 사용, 비축, 생산, 이전 금지 및 폐기에 대한 협약(1997)에 따르면, 국가는 그 어떤 경우에도 대인지뢰를 사용, 개발, 생산, 비축, 또는 이전하거나 다른 이가 그렇게 하도록 도와서는 안 된다. 또한 기존 대인지뢰 비축량을 전량 파괴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대인지뢰가 묻혀 있는 토지를 정화해야 한다.

집속탄

집속탄협약(2008)은 집속탄(다수의 소형 폭발성 자탄을 방출하는 폭탄, 포탄, 로켓 또는 미사일)의 사용, 생산, 비축 및 이전을 금지한다. 이러한 금지 외에도 집속탄을 보유한 국가는 이러한 무기의 비축분을 파괴하고 잔존 집속탄(불발 집속탄 및 과거 무력총돌 시 발생한 자탄)으로 오염된 토지를 정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집속탄 피해자에 대한 지원 제공과 관련된 구체적인 의무도 있다.

خطر الغام
DANGER MINES



기타 재래식 무기

1980년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재래식무기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협약(CCW) 또한 특정 무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 특정재래식무기 협약 제1의정서는 엑스레이로 인간의 몸에서 탐지 불가능한 파편으로 상해를 입히는 것을 주요 효과로 하는 모든 무기의 사용을 금지한다.
- 특정재래식무기 협약 제2의정서는 지뢰(대인지뢰와 대차량지뢰 모두), 부비트랩 및 기타 유사한 장치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이 의정서는 1996년 개정되어 새로운 규정이 추가되었다.
- 특정재래식무기 협약 제3의정서는 소이성 무기 또는 물체에 불을 내거나 불꽃 또는 열 작용을 통해 사람에게 화상을 입히기 위해 고안된 무기(예: 네이팜탄, 화염방사기)의 사용을 규제한다.
- 특정재래식무기 협약 제4의정서는 영구적 실명을 유발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레이저 무기의 사용 및 이전을 금지한다.
- 특정재래식무기 협약 제5의정서에 따르면 총돌 당사자는 전쟁의 잔존 폭발물 (불발탄 또는 유기탄)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처음에 특정재래식무기 협약과 그 의정서는 국제적 무력충돌 시에만 적용되었으나 (1996년 개정된 제2의정서 제외) 협약의 제1조가 2001년 12월 21일 개정되면서 이들 조약의 적용 범위가 비국제적 무력충돌로 확장되었다.

화학무기와 생물학무기

국제사회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화학무기와 생물학무기의 사용을 금지했다(질식성, 독성 또는 기타 가스 및 세균학적 전쟁 수단의 전시 사용 금지에 관한 1925년 의정서). 이들 무기의 사용 외에도, 1972년 (생물무기협약)과 1993년 (화학무기협약)에 개발, 비축, 이전을 금지하고 비축분을 파괴하도록 함으로써 금지를 강화했다. 화학무기협약에서는 폭동진압 작용제(예: 최루가스)를 전쟁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핵무기

핵무기 사용을 포괄적으로 또는 보편적으로 금지하는 경우는 없다. 1968년 핵무기비확산조약은 기본적으로 핵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고 핵군축 달성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1996년 국제사법재판소는 권고적 의견에서 핵무기에 국제인도법이 적용되며, 특히 구별의 원칙과 불필요한 고통 유발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관련 규칙을 핵무기에 적용함에 있어 국제사법재판소는 “핵무기의 위협 또는 사용은 무력충돌 시 적용되는 국제법 규칙에 일반적으로 반한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조차 핵무기 사용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2011년 국제적십자운동 대표위원회(Council of Delegates of the International Red Cross and Red Crescent Movement :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IFRC) 및 각국 적십자사·적신월사로 구성)에서 핵무기에 대한 적십자운동의 입장을 설명하는 기념비적인 결의안으로서 “핵무기 제거를 위한 노력(Working towards the elimination of nuclear weapons)”을 채택했다. 결의안에서 위원회는 어떠한 핵무기의 사용과 국제인도법의 규칙, 특히 구별, 사전 주의 및 비례의 원칙을 양립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없었다고 선언하였다. 또한 결의에서는 핵무기가 절대 다시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구속력을 갖는 국제 합의를 통해 핵무기를 금지하고 제거하기 위한 협상을 신속하고 단호히 추구할 것을 각국에 호소했다.

신무기의 국제인도법 준수 보장

국제인도법은 무기 기술의 발달과 국가의 신무기 획득을 규제하기도 한다. 제1추가정의서의 제36조에 따르면 각 당사국은 자신이 연구, 개발, 획득 및 채택한 그 어떤 새로운 무기, 전쟁수단 또는 방법이라도 사용시 자국을 구속하는 국제법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취지의 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 국가의 군대가 적대행위에 가담할 시 그 국가가 지닌 국제의무에 따라 행동하도록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전쟁 방법

여러 가지 전쟁 방법이 조약 또는 관습 국제인도법으로 명확하게 금지되어 있다.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즉결 처분

어떤 자비도 베풀지 아니하고 즉결처분할 것을 지시하거나 이를 이용해 적을 위협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적대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 적군에게는 투항하고 포로가 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상당한 군인은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

약탈

침략군 또는 점령군이 적의 국민으로부터 개인 재산을 강제 몰수하는 행위인 약탈은 금지된다.

기아

전쟁 방법으로서 민간인 대중을 굶기는 것은 금지된다. 민간인 대중의 생존에 필수적인 물자를 공격, 파괴, 제거 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 또한 금지된다.

배신

적을 배신행위에 의하여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생포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1추가 의정서 제37조는 ‘배신’을 “적의 믿음을 배신할 의도를 가지고, 적으로 하여금 그가 무력총돌 시 적용 가능한 국제법 규칙 하의 보호를 부여받을 권리가 있거나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적 전투원을 공격하기 위해 상처 또는 병을 위장하는 것은 배신행위에 해당한다. 전쟁의 위계 즉,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고 배신행위 금지를 존중하는 선에서 적을 혼란시키기 위한 행위는 금지되지 않는다. 예컨대 위장, 유인, 양동 작전, 오보의 이용은 배신행위가 아니다.



Hany Hawasly/ICRC

13. 표장의 사용 및 보호와 관련된 국제인도법 조항에는 무엇이 있나?

적십자, 적신월, 적사자태양, 적수정 표장은 국제적으로 승인된 표지로서, 무력충돌 시 국제인도법에 따라 부상자와 병자에게 제공되는 중립적이고 공평한 원조와 보호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들 표장은 두 가지 기능을 한다. 첫째, 무력충돌 시 의무요원, 의무부대 및 의무 수송수단, 군중 요원의 보호를 위한 시각적 표식 역할(보호적 사용)을 한다. 둘째, 사람 또는 물자가 국제적십자·적신월운동 단체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표시적 사용). 위에서 언급했듯이 적십자운동 단체는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IFRC) 및 모든 각국 적십자사 및 적신월사로 구성되어 있다.

보호 장치로서의 사용

표장은 기본적으로 지상, 해상, 공중에서 의무부대가 보호 장치로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게다가 관련 기관의 명시적 허가 및 그 통제 하에 무력충돌 시 부상자, 병자 및 조난자의 치료와 간호를 담당하는 민간 의무요원, 병원과 기타 민간 의무대 및 수송수단 또한 보호 표장을 사용할 수 있다. 표장은 무력충돌 시 특정 사람 및 물자에 대한 보호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므로 먼 거리에서도 잘 보이도록 그 크기를 가능한 크게 해야 한다. 표장 그 자체가 보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표장은 제네바 제협약 및 추가의정서가 제공하는 보호에 대한 시각적 표지일 뿐이다.

표시 장치로서의 사용

표장은 또한 전시와 평시 모두 사람 또는 물자가 적십자운동 또는 그 요소와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한 표시적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이 경우 표장은 표시적 사용과 보호적 사용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크기가 작아야 한다.

ICRC와 국제적십자사연맹은 보호적 목적과 표시적 목적으로 표장을 사용할 권리를 항시 갖는다.

표장의 남용

국제인도법에서 명시적으로 허가하지 않은 전시 및 평시의 표장 사용은 남용으로 해당하고 금지된다. 남용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 모방 – 모양 및/또는 색상으로 인해 사용이 승인된 표장과 혼란을 유발하는 경우를 의미함.
- 표장권 침해 – 권한 없는 개인이나 단체(상업적 기업, 의료 시설 또는 약국, 비정부기구 혹은 개인 등)가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 또한, 국제인도법 규칙에 따라 표장 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이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도 표장권 침해에 해당함.
- 배신 – 적을 살상하거나 생포할 목적으로 보호받는 지위를 위장하기 위해 표장을 사용하는 행위(질문 12 참조). 국제적 무력충돌 시 배신행위를 위해 표장을 사용하는 것은 전쟁범죄에 해당한다.

전시나 평시 모두, 표장의 남용으로 인하여 교전 당사자가 표장의 보호적 기능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기에, 이는 국제인도법에 의해 수립된 보호체계 전체를 위협에 빠뜨릴 수 있다. 남용의 경우, 표장의 공적 중요성이 훼손되기에, 인도적 위기에 처한 피해자와 피해 공동체에 대해, 적십자운동 단체가 안전하게 접근할 수 없게 되거나, 원조 및 보호 제공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

국제인도법은 국가가 전시와 평시를 불문하고 표장의 남용을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표장의 사용과 보호에 대한 법을 제정하여 남용 시 적절한 제재와 처벌을 규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제인도법에서 승인한 식별표장은 그 어떤 종교, 민족, 인종 또는 정치적 의미나 연관성도 갖지 않는다.

표장

제네바 제협약은 적십자, 적신월, 적사자태양의 세 가지 표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적사자태양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



1. 적십자, 적신월, 적사자태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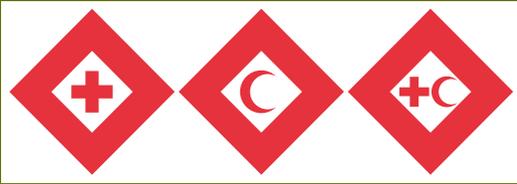
2005년 제3추가의정서에서 추가 승인된 식별표장은 적수정(그림2)이다. 적수정 표장은 제네바 제협약에 정의된 다른 표장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사용되고 같은 목적을 수행하며, 적십자나 적신월의 표시를 원치 않는 국가에 대안을 제공한다.



2. 적수정

적수정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국가의 적십자사·적신월사는 표시적 목적으로 하나 이상의 기존 표장을 적수정에 통합할 수 있다 (그림 3). 주요 선택사항으로 적수정 표장 안에 적십자 또는 적신월을

포함시키거나 적십자와 적신월을 나란히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다.



3. 적십자, 적신월, 그리고 적십자와 적신월을 나란히 사용한 경우

제3추가이정서에 따르면 적수정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국가의 적십자사·적신월사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적수정 안에 다른 표장 또는 표지를 포함시킬 수 있다. 첫째, 다른 표장 또는 표지는 이미 실제로 사용되고 있어야 한다. 둘째, 제3의정서 채택 이전에 수탁처(스위스 연방정부)를 통해 다른 체약국(제네바 제협약의 다른 당사국) 및 ICRC에 사용에 관한 사항이 전달되었어야 한다. 현재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다른 표장은 다윗의 붉은 방패(REDSHIELD OF DAVID)가 유일하다. 이 표장은 이스라엘의 적십자사 마겐 다비드 아돔(MAGEN DAVID ADOM)이 1930년대부터 사용해왔다 (그림 4).



4. 적수정 안 다윗의 붉은 방패



14. 실종자 및 가족 찾기 활동에 대한 국제인도법의 규정은 무엇인가?

총돌 및 재해가 남기는 것은 육체적 상처 이상이다. 혼란, 공포, 두려움 속에서 가족들이 몇 분 만에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결국 오랜 시간 자녀, 배우자 또는 부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어 괴로워하게 된다. 제네바 제 협약과 추가의정서는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기록할 의무, 사망자에 대한 의무 및 친척의 소식을 알 가족의 권리와 관련된 의무를 규정하여 사람들이 실종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자유를 박탈당한 자

모든 무력충돌 당사자는 자유를 박탈당한 자, 예를 들어 포로 또는 민간인 피억류자의 세부 개인 정보를 기록해야 한다(질문 10 참조). 이 정보는 포로 또는 피억류자에게 생포자 명부 또는 억류자 명부의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또한 모든 세부 정보를 이익보호국, 즉 충돌 당사자 및 적국 내 충돌 당사자 국민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지명된 중립국(질문 19 참조), 또는 ICRC 를 통해 친지에게 전달해야 한다. 또한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가족과 연락할 권리를 갖는다(단 통신의 권리는 절대적인 군사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한될 수 있다).

사망자

모든 충돌 당사자는 사망자를 수색, 수습, 이송시킬 뿐만 아니라 신체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충돌 당사자는 반대 당사자 또는 유족이 요청할 경우 유해를 송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망자의 시체는 예우를 갖춰 처리하고 분묘를 존중하고 적절히 유지해야 한다. 시체 매장 전에는 수집 가능한 모든 정보를 기록해야 하며 분묘의 위치를 표시하여 식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알 권리

국제인도법에 따르면 국제적 무력충돌의 당사자는 실종자의 생사를 파악하여 이를 알리기 위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박스 참조). 또한 가족들이 친척의 생사를 알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다. 기본적으로 누가 '실종자의 가족 구성원'으로서 자격을 갖는지는 국내법에서 정의하고 있으나 모든 정의는 적어도 가까운 친척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포함해야 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적출자녀, 혼외자녀, 입양자녀, 의붓자녀
- 결혼 유무와 상관없이 평생 반려자
- 부모(시부모, 장인장모 및 입양부모 포함)
- 같은 부모 또는 다른 부모에게서 태어났거나 입양된 남자 및 여자 형제

모든 충돌 당사자는 반대 당사자가 보고한 실종자를 수색해야 한다.

비국제적 무력충돌에 대한 조약 규칙은 발전이 덜 된 상태이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규칙 중 다수가 국제적 및 비국제적 무력충돌에 관습법으로서 적용되고 있다.

실종자는 그 가족들이 소식을 듣지 못하고/못하거나, 믿을 수 있는 정보에 기초하여 국제적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다른 폭력 상황의 결과로 실종 신고된 개인이다.

사람들이 실종되는 상황은 다양하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군에 입대했거나 무장단체에 가입한 친지의 가족이 서로 연락을 유지할 수단이 없어 연락이 끊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군대 또는 무장단체의 구성원은 신분증명표와 같이 신원확인에 필요한 수단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사망 시 작전 중 행방불명자로 처리될 수 있다.
- 생포, 체포, 또는 납치된 개인은 비밀리에 유폐되거나 알려지지 않은 장소에 구금될 수 있고 구금 중 사망할 수 있다. 많은 경우 가족들은 이들의 소재지를 알지 못하거나 이들을 방문하거나 연락을 취하는 것도 허락받지 못한다. 종종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에 대한 정보(체포, 구금, 사망 및 매장 날짜와 장소)가 기록되지 않거나 이러한 정보를 담고 있는 기록이 은폐되거나 폐기된다.
- 대량학살이 벌어진 후 많은 사람들이 실종 신고가 된다. 대개 희생자의 시체는 사망한 장소에 방치되거나, 서둘러서 매장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되거나, 심지어 손상되기도 한다.
- 실항민과 난민, 충돌로 고립된 사람들, 점령지 거주 주민들은 가족과 친지들에게 소식을 전달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이산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 아동 또한 충돌 지역에서 피란하다가, 가족과 이별하면서, 군대 또는 무장단체에 강제징집되거나, 투옥되거나, 심지어 서둘러 약식으로 입양되면서 실종될 수 있다.
- 마지막으로 시신을 파내어 사후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망자의 신원 파악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항상 보관되고 적절히 관리되는 것도 아니다.

국제인도법은 강제실종을 어떻게 다루고 있나?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유엔협약(U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에서는 ‘강제 실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국가 요원 혹은 국가의 승인, 지원 또는 묵인 하에 행동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의한 체포, 구금, 납치 또는 기타 형태의 자유의 박탈을 말하며, 이후, 자유의 박탈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거나 실종자의 생사 또는 행방을 은폐하여 실종자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됨”

강제실종은 다양한 국제인도법 규칙에 위배되며, 특히 자의적 자유의 박탈, 고문 및 기타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인 대우, 살인 금지에 위배된다. 국제적 무력충돌 시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과 관련해서 등록, 방문, 정보 교환을 폭넓게 요구하는 것은 특히 강제실종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비국제적 무력충돌 당사자 또한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의 등록 등 실종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강제실종의 금지는 가정생활을 존중하도록 요구하는 규칙과, 각 충돌 당사자에게 무력충돌로 인해 실종된 사람의 행방을 파악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실시하고 실종자의 생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가족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규칙에 비추어 생각해야 한다. 이들 규칙의 누적적 효과로 국제인도법에서는 강제실종을 금지하고 있다.

국내정보국

제네바 제협약(제3제네바협약 제122조, 제4제네바협약의 제136조 참조)은 총돌이 발발하는 때 및 점령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각 총돌 당사자가 그 권한 내에 있는 포로 및 민간인 피억류자에 관한 정보를 수령하고 전달하기 위한 공식적인 정보국을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교전 당사국은 권한 내의 모든 포로 및 민간인 피억류자에 대하여 자국 정보국에 통보하고 이들의 신원과 관련된 수집 가능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 직계친족이 최대한 신속하게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네바 제협약 당사국의 경우 해당국의 적십자 또는 적신월사가 정보국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중앙심인국

“중앙포로정보국은 중립국에 설치한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당사국에 중앙포로정보국의 조직을 제안한다. 정보국의 기능은 포로와 관련해서 공적 또는 사적 경로로 입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정보를 수집하고 포로의 본국 혹은 포로가 속한 국가에 정보를 가급적 조속히 전달하는 것이다.” (제3제네바협약의 제123조, 민간인 피억류자에 대해서는 제4제네바협약 제140조 참조). 중앙포로정보국은 ICRC에서 권장하며, 비포로, 민간인, 난민 등 다른 부류의 사람을 포함하는 정보국의 모든 활동을 반영하기 위하여 1960년 중앙심인국으로 개명되었다.



15. 인도주의적 접근 및 지원에 있어 국제인도법은 무엇을 규정하는가?

국제적이든 비국제적이든 무력충돌이 발생하면 상당한 규모의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게 된다. 민간인은 전쟁 시 식량, 물, 거처 등 기본적인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들이 결핍되는 경우가 많으며, 의료 및 기타 필수적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게 된다. 이유는 다양하다. 전투 작전으로 인해 재산이 파괴되었을 수 있고 지뢰, 집속탄 또는 기타 전쟁의 잔존 폭발물이 산재해 있어 경작지를 쓸 수 없게 되었을 수도 있다. 주민 전체가 소득원을 버리고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이와 더불어 경제 및 기타 기반 시설이 손상되거나 파괴되어 국가 또는 지역 전체의 안정에 장기간 영향을 주기도 한다.

국제법에 따라 국가는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민간인 및 민간인 대종의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되도록 보장할 1차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국가가 책임을 이행할 수 없거나 그러할 의향이 없는 경우 국제인도법은 관련 국가의 동의하에 인도주의 기관과 같은 다른 주체가 구호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 임무 수행을 위해 인도주의 기관들은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인도주의적 지원에 관한 법체계는 제네바 제협약과 1977년 추가의정서뿐만 아니라 관습국제인도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인도적 접근 및 지원에 대한

국제인도법 규칙은 첫째로 민간인 대중이 적절히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 구호활동이 승인될 수 있으며 점령 상황에서는 반드시 허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국제인도법은 피해자에 대한 인도적 구호활동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러한 활동과 관련된 조건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구호 활동을 수행할 의무

제1추가규정서와 제2추가규정서의 관련 조항은 주민의 생존에 필수적인 물품이 공급되지 않는 경우, 구호 활동에 “착수해야 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법적 의무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는 (점령 시를 제외하고) 관련 국가가 동의할 때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 편으로는 구호활동에 반드시 착수해야 하는 점과 다른 한편으로는 관련 국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의 두 가지 상반되는 요구 조건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동의 조건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 국제적 무력충돌 시 (점령지에서 발생하지 않는 경우) 관련 당사자는 자의적인 근거로 동의를 보류해서는 안 된다. 구호활동을 막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근거로 해야 한다. 특히, 민간인 대중이 기아의 위협에 놓여있고 공평하고 비차별적으로 구호를 제공하는 인도주의 기관이 그러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당사자는 동의할 의무가 있다.
- 비국제적 무력충돌 시에도 위의 규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비국가 무장단체가 지배하는 영토의 민간인을 위한 구호일 경우 영토 국가의 동의를 필요하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 점령국은 피점령지역 주민에게 식량과 의료품이 공급되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특히 피점령지의 자원이 부족할 경우 점령국은 필요한 식량, 의료품 및 기타 물자를 반입해야 한다. 피점령지의 주민 전체 또는 일부가 필수품을 적절히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 점령국은 주민 원조를 위한 구호 계획에 동의할 의무를 부담한다.

어떤 조건에서 인도주의적 구호품이 제공되는가?

두 번째 규칙은 인도주의적 구호 제공시 따라야 하는 조건에 대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다.

- 인도, 공평 및 비차별: 국제인도법의 조항은 공평하고 인도적인 성격으로 불리한 차별 없이 행해지는 지원에만 적용된다. 이는 특히 소속, 종교, 성별 등에 상관없이 모든 곤궁한 이에게 구호품이 전달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 통제: 구호품의 통과를 허용하는 당사자는 검사 및 통과와 관련된 조항을 포함하는 기술적 조치를 수립함으로써 구호품의 전달을 통제할 수 있다.

국제인도법과 '인도적 근거로 개입할 수 있는 권리'

'개입권 또는 개입의무'가 인도주의적 이유로 인한 무력 개입을 정당화하는 것이라면, 이는 국제인도법이 아닌 국제 관계에서 무력 사용의 적법성에 관한 규칙의 문제이다. 다시 말해 이는 개전법(JUS AD BELLUM)의 문제이다. 현재 '보호책임'의 개념이 인도주의적 근거로 개입할 '권리' 또는 '의무'의 개념을 점차 대체하고 있다(질문 2 참조).

2005년에 발간된 ICRC의 관습법에 대한 연구서에서 인도적 지원 제공에 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확인했다. 이들 규칙은 국제적 및 비국제적 무력충돌에 모두 적용된다.

- 인도적 구호: 인도적 구호 활동을 벌이는 요원 및 구호물자는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
- 충돌 당사자는 그들 지배하에서 곤경에 처한 민간인을 위한 인도적 구호가 공평한 성격을 띠고 불리한 차별 없이 행해지는 경우, 인도주의적 구호는 신속하고 막힘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충돌 당사자는 허가받은 인도적 구호요원에게 임무 수행에 필요한 이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긴급한 군사상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요원들의 이동이 임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 전쟁 방법으로써 민간인 대중을 굶기는 것은 금지된다.



16. 국제인도법은 난민과 실향민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나?

난민은 국경을 넘은 사람으로서 국적국에서 박해를 받을 위험에 처했거나 박해의 피해자였던 사람들을 의미한다. 반면 국내 실향민(Internally displaced persons, IDPs)은 국경을 넘지 않았으나 자신이 살던 곳에서 도망쳐야 했던 사람들을 뜻한다. (아래 박스 참조)

난민은 난민법(주로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9년 아프리카통일기구난민협약)과 인권법, 그리고 특히 강제송환금지(non-refoulement)원칙의 보호를 받는다. 난민의 보호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Office of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의 임무에 포함된다. 또한 난민이 무력충돌 중인 국가에 있는 경우 국제인도법의 보호를 받는다. 난민은 국제인도법이 제공하는 일반적인 민간인의 보호 외에도 제4제네바협약 및 제1추가협약에 따라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예를 들어 제4제네바협약의 제44조는 억류국은 어떤 정부의 보호도 사실상 받지 못하는 외국인 난민을 적국 외국인으로 대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추가협약 제73조에서도 난민은 모든 상황에서 불리한 차별 없이 피보호인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실항민이 필요한 보호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보편적인 조약은 없다. 2012년 12월 발효된 아프리카 국내 실항민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협약(캄팔라 협약)은 국내 실항민의 보호 및 지원 문제를 다룬 최초의 국제협약이다. 국내 실항민은 국내법, 인권법, 그리고 무력충돌 중인 국가에 있는 경우 국제인도법 등 다양한 법체계의 보호를 받는다. 유엔의 국내 실항에 대한 지도원칙

(United Nations Guiding Principles on Internal Displacement, 1998)은 국내 실항민에 대한 중요한 문서이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들 원칙은 기존 국제법을 반영하며 귀환, 재정착 및 재통합 등 실항의 모든 단계에서 국내 실항민 보호를 위한 국제적 틀을 제공하는 것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민간인 보호를 위한 국제인도법 규칙이 존중받는다면 실항을 방지할 수 있다. 다음을 금지하는 규칙은 특히 중요하다.

- 민간인 및 민간물자에 대한 직접적 공격 또는 무차별적 공격
- 민간인 대중을 기아에 빠뜨리거나 이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물자의 파괴
- 집단적 처벌로서, 주거지 파괴

또한 국제인도법은 안전 및 긴급한 군사상의 이유가 있지 않는 한 민간인에게 거주지를 떠나도록 강요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실항민이 만족스러운 조건의 피난처, 위생, 건강, 안전, 영양을 누리고 가족 구성원과 헤어지지 않도록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총돌 당사자로 하여금 공중에 처한 민간인에게 구호품이 도달하도록 허용할 것을 요구하는 규칙에서도 실항민은 보호 대상이다.

이러한 모든 규칙은 관습국제인도법에서 인정하고 있으며 국제적 및 비국제적 무력총돌 모두에 적용된다.

난민이란?

1967년 의정서로 개정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무국적자로서 그러한 사건으로 인해 종전의 상주 국가 이외에 있는 자로서 해당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아프리카통일기구난민협약(1969)과 난민에 대한 카타헤나선언(CARTAGENA DECLARATION ON REFUGEES, 1984)은 더 넓은 의미의 정의를 채택하여, 무력충돌 및 기타 폭력 상황 등 공공질서를 크게 해치는 사건을 피해 도망가는 사람들을 포함시켰다.

국내 실항민이란?

유엔의 국내 실항에 대한 지도원칙(1998)에서는 국내 실항민을 “무력 충돌, 무분별한 폭력 상황, 인권 침해, 자연재해 또는 인재 등으로 인해, 혹은 그 영향으로 인해 집 또는 상거소에서 강제적 또는 의무적으로 도피하거나 떠나게 되었으며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을 넘지 않은 개인 또는 단체로서의 사람들”로 정의하고 있다.

무력충돌에 휩싸인 이주민

‘이주민’의 정의로서 보편적으로 인정된 것은 없다. 이주 결정은 ‘자발적’ 또는 ‘강제적’일 수 있지만, 이 둘을 명확하게 구별하기란 과거에 비해 훨씬 어려워졌다. 무력충돌이나, 재해와 같이 급속히 진행되는 사건이 직접적인 이유가 되어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날 수 있다. 더 나은 경제적 기회, 서서히 진행되는 점진적인 환경 파괴, 권리 탄압의 증가(특히 소수민족의 경우), 더욱 안정된 장소에서 가족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 등 이주 사유에 따라 이주민의 정확한 이주 위치와 기간이 결정될 수 있다. ‘혼합이주(MIXED MIGRATION)’란 용어는 현재 이주노동자와 섞여 망명 신청자, 난민, 무국적자가 무력충돌을 피해 탈출하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혼합이주’는 이러한 인구의 이동을 유발하는 상황과 복합적 요인을 모두 설명한다.

많은 이주민들은 난민 자격을 얻지 못하고, 이들이 국경을 넘게 되면, 정의상 국내 실항민이 아니게 된다. 실항(또는 이주)의 최초 원인과 상관없이 이들의 취약성과 보호에 대한 필요 및 이동 중 이들이 경험하는 인권 위협(예: 인신매매)은 과소평가될 수 없다.

모든 이주민의 보호 문제를 특정해서 다루는 보편적인 조약은 없다. 관련 조항은 국내법, 인권법, 그리고 이들이 무력충돌에 가담한 국가 내에 있을 시 국제인도법 등 다양한 법 체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력충돌에 가담한 국가의 영역에 있는 이주민은 민간인으로 간주된다.



17. 국제인도법에 따른 특별 보호 대상은 무엇인가?

민간 물자는 국제인도법의 총칙에 따라 공격으로부터 보호받는다. 일부 물자 또한 무력충돌 피해자, 민간인 대중 또는 인류 전체를 보호하는 데에 있어서 특별히 중요하기에, 또는 무력충돌 시 특히 파괴되거나 손상되기 심상이기에 국제인도법에 따라 특별히 보호받는다. 아래에서 몇 가지 예를 소개한다.



의무부대와 의무수송수단

‘의무부대’라 함은 군용 또는 민간용이든, 고정식이든 이동식이든, 영구적 또는 일시적이든 간에 의료 목적으로 조직된 시설 및 기타 부대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병원 및 유사한 단체, 수혈센터, 예방의료 본부 및 기관, 의료 창고와 의무부대의 의료 및 의약품 창고를 포함한다.

‘의무수송수단’이라 함은 군용 또는 민간용이든, 영구적 또는 일시적이든 간에 총돌 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의 통제 하에서 의무수송에 전적으로 할당된 모든 수송수단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앰블런스, 병원선 및 의무 항공기 등 육상, 해상 또는 공중 운송수단이 포함된다.

국제인도법에 따른 의무부대 및 의무수송수단의 특별한 보호는 부상자 및 병자가 간호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제공되는 보호의 부수적인 형태이다. 의무부대 및 의무수송수단에 대한 국제인도법의 보호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1864년 제네바협약 또는 1899년과 1907년 헤이그협약에서 그 내용을 찾을 수 있다. 군의무부대 및 의무수송수단, 민간 병원 및 기타 의무수송수단에 대해서는 제1제네바협약과 제4제네바협약에서는 더욱 자세히 서술되었다. 1977년에는 의무부대 및 의무수송수단에 대한 보호가 확대되어 모든 상황에서, 특히 민간의무부대 및 의무수송수단을 포함하게 되었다. 비국제적 무력충돌 시 의무부대 및 의무수송수단에 대한 보호는 부상자 및 병자의 수용 및

간호 의무에 대한 공동 제3조에서 명시적으로 도출되었다. 이 보호는 또한 제2추가의정서에 명시되어 있다. 민간이든지 군이든지 모든 의무부대 및 의무수송수단을 보호하고 존중해야 하는 의무는 국가 실행을 통해 관습국제법 규범으로 확립되어서 국제적 및 비국제적 무력충돌 모두에서 적용 가능하다.

모든 상황에서 의료 목적으로만 할당된 의무부대와 의무수송수단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에서

- **존중**은 특히 의무부대와 의무수송수단이 공격당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들의 활동이 과도하게 저해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 **보호**는 의무부대와 의무수송수단이 활동에 있어 적극적으로 지원받고, 공격 또는 제3자의 과도한 개입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의무부대는 가능한 군사 목표물 근처에 위치하지 않아야 한다. 더욱이 의무부대와 수송수단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군사 목표물의 공격을 막기 위한 방패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의무부대와 의무수송수단이 인도적 기능에서 벗어나 적에게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데 사용된 경우 보호받을 수 없으며,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을 공격하기 전에 사전 경고가 있어야 하고, 적절할 때마다 상당한 시한을 설정해야 한다. 경고가 무시된 경우에만 공격이 허가될 수 있다. 적에게 위해가 되는 행위의 예에는 건강한 전투원을 피신시키거나 무기 또는 탄약을 저장하기 위해, 혹은 군감시 초소 또는 군사 행동에 대한 방패로 의무부대를 사용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그러나 군사 목표물에 대한 모든 공격에서와 마찬가지로 비례성 및 사전 주의 규칙은 적에게 위대한 행위를 하는 의무부대 또는 수송수단 내부에 있는 부상자와 병자, 또는 의료요원을 위해 준수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허가받은 의무부대는 식별 표장을 표시할 권리를 갖는다(질문 13 참조). 의무부대와 의무수송수단은 식별 표장의 표시 여부와 상관없이 특별히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하나, 표장을 표시할 시 식별이 용이해진다.

문화재

문화재는 일반적으로 민간 물자로서 보호받는다. 또한 문화재는 가장 값진 민간 물자에 속하기에 훼손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는 해당 문화재가 관련 민족의 유산으로서 필수적인 측면을 구성할 경우 훨씬 중요해진다.

‘문화재(cultural property)’라 함은 종교, 예술, 과학, 교육 및 자선 목적의 동산 혹은 부동산, 또는 역사적 기념물을 의미한다. 건축학적 또는 역사적 기념물, 고적지, 예술품, 서적, 또는 주된 목적 및 실질적인 목적이 문화재 보관인 모든 건물, 대량의 문화재를 보관 중인 센터 등 인류 문화유산에 있어 매우 큰 중요성을 갖는 재산은 청색과 흰색의 방패형 표장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림 다음 페이지).

문화재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1907년 헤이그협약, 1954년 무력충돌 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협약 및 그 의정서, 1977년 추가의정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문화재를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는 국제적 및 비국제적 무력충돌을 관장하는 관습법에도 존재한다.

문화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의무에서

- **존중**은 문화재가 군사 목표물이 되지 않는 한 문화재 훼손을 피하기 위해 군사 작전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의미하며;
- **보호**는 모든 문화재의 압류, 파괴 또는 고의적인 훼손이 금지됨을 의미한다. 점령국은 또한 피점령지로부터의 문화재 불법 유출을 방지하고 불법 유출된 문화재를 피점령지의 권한 있는 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인류 문화유산에 있어 매우 큰 중요성을 갖는 것으로 여겨지는 재산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

- 1954년 문화재보호에 대한 헤이그협약은 첫째, 청색과 흰색의 방패(열그림)로 재산을 표시할 것을 장려함으로써 인류 문화유산에 있어 매우 큰 중요성을 갖는 것으로 여겨지는 재산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 했다.
- 그러한 재산은 긴급한 군사적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격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1954년 헤이그협약에 대한 제2의정서에서는 긴급한 군사적 필요성이 주장될 수 있는 경우를 (1) 해당 문화재가 그 기능상 군사적 목표물이 된 경우 (2) 해당 목표물을 공격하여 얻을 수 있는 군사적 이득과 유사한 군사적 이득을 얻기 위해 실현 가능한 대안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 명시하고 있다. 제2의정서는 이에 더하여 이러한 필요성 여부는 특정 수준의 지휘체계에서 수립되고 공격 시 상황이 허가되는 한 유효한 사전 경고가 내려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추가의정서 제53조 제1항 및 제2추가의정서 제16조는 여기서 더 나아가 긴급한 군사적 필요가 있더라도 예외사항을 두지 않는다. 이들 조문은 제한된 범위의 매우 중요한 문화재, 즉 ‘국민(인류)’의 문화적 또는 정신적 유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문화재만 포함한다. 추가의정서의 대상인 재산은 그 중요성이 커 모든 사람이 인식할 수 있어서, 표시할 필요도 없는 것이어야 한다.
- 그러한 재산의 군사적 사용은 재산 파괴 또는 훼손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긴급한 군사상 필요가 없는 한 금지된다. 1954년 헤이그협약 제2의정서는 문화재를 파괴 또는 훼손에 노출되도록 사용할 때 “문화재의 그러한 이용과 유사한 군사적 이점을 가진 다른 실현 가능한 방법 간에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그리고 그러한 기간 동안”에만 긴요한 군사적 필요를 원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제2의정서는 이러한 필요성이 특정 수준의 지휘체계에서 수립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추가의정서 제53조 제1항 및 제2추가의정서 제16조는 여기서 더 나아가 긴급한 군사적 필요가 있더라도 예외사항을 두지 않는다.
- 그러한 재산에 대한 모든 형태의 도난, 약탈 및 유용과 이에 대한 기물 파손 행위는 금지된다.



인류 문화유산에 있어 매우 큰 중요성을 갖는 것으로 여겨지는 재산의 보호를 나타내는 청색과 흰색 방패 표장

자연환경

‘자연환경’은 생물군, 암석권, 수권, 대기를 포함하는 지구의 역학, 구성 또는 구조 그리고 우주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모든 식물(초목, 숲 등), 야생동물, 미생물, 토양, 암석, 공기, 물 및 기타 자연 자원, 기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무력충돌은 자연환경에 장기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특정 무기, 특히 화학무기 또는 핵무기의 사용은 환경에 장기간 지속되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군사전략의 일면으로서, 충돌 당사자들이 적의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환경의 일부를 목표로 삼지만, 의도하지 않은 충돌의 결과로도 발생할 수 있다. 배수로, 하수도, 발전소, 화학 공장 및 기타 산업이 파괴되고 폐허만이 남게 되면서 상수원, 경작지 및 대기가 오염되고, 이로 인해 인구 전체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어느 정도의 환경 피해는 무력충돌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으로 용인될 수 있으나 이러한 피해가 지나쳐서는 안 된다.

따라서 국제인도법은 환경 피해에 대한 제한을 인정한다. 첫째, 일반적으로 환경은 민간 물자로서 보호받으며 이에 따라 직접적인 공격뿐만 아니라 과도한 우발적 피해로부터도 보호받는다. 국제인도법은 우발적 피해를 피하고 또한 항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행 가능한 모든 사전 예방 수단을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자연환경은 국제인도법에 따라 특별히 보호받는다. 실제로 국제인도법은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심각한 피해”로부터 자연환경을 보호한다. 특히 자연환경에 이러한 피해를 의도하거나, 그러한 피해 발생을 예상할 수 있는 전쟁 방법 또는 수단은 국제적 무력충돌 시 조약 및 관습법에



의해 금지된다. 이러한 규칙이 국가 관행을 통해 비국제적 무력충돌에서도 관습국제법 규범으로서 확립되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1976년 환경 변경 기술의 군사적 또는 기타 적대적 사용의 금지에 관한 협약(Environmental Modification, ENMOD)은 무력충돌 시 환경을 한층 더 보호하고 있다. ENMOD는 다른 당사국을 파괴, 피해 또는 손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태풍, 해일 또는 기후변화 등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심각한 훼손”을 가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환경을 변경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즉, 무기로서의 고의적 자연환경 파괴는 금지된다.



Tomohiro Ohsumi/Pool/REUTERS

위험한 물리력을 포함하고 있는 시설물

‘위험한 물리력을 포함하고 있는 시설물’이라 함은 댐, 제방, 원자력발전소를 말한다.

위험한 물리력을 포함하고 있는 시설물은 공격으로 인해 위험한 물리력이 방출되고 그 결과 민간인의 심각한 인명 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군사 목표물로 지정되었다고 할지라도 공격해서는 안 된다. 이들 시설물에 위치하거나 가까운 곳에 위치한 군사 목표물 또한 공격 시 마찬가지로 민간인의 심각한 인명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공격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규칙은 제1 추가의정서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으며 국제적 무력충돌과 비국제적 무력충돌에 대한 관습법에도 존재한다. 이러한 시설물을 신속히 식별하기 위해 무력충돌 당사자는 동일한 축 위에 놓인 밝은 주황색 원 세 개로 구성된 특수 표지표 이들을 표시할 수 있다 (아래 참조).



18. 국제인도법의 테러리즘 관련 규정은 무엇인가?

테러리즘에 대한 ICRC의 입장은?

ICRC는 무차별적이고 민간인 대중에게 공포를 확산시키는 폭력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국제인도법은 '테러리즘'을 정의하지 않으나 '테러'라고 통상적으로 간주되는 무력충돌 시 행해지는 대부분의 행동을 금지하고 있다. 무력충돌 시 전투에 참가하는 사람은 항상 민간인과 전투원, 민간물자와 군사 목표물을 구분해야 하는 것이 국제인도법의 기본 원칙이다. '구별'의 원칙은 국제인도법의 핵심이다(질문 11 참조). 특히 민간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많은 국제인도법 규칙(예: 특히 민간인 및 민간 물자에 대한 고의적 또는 직접적인 공격 금지, 무차별 공격 금지, '인간 방패' 사용 금지)은 여기에서 파생된 것이다. 또한 국제인도법은 인질 억류를 금지하고 있다. 무력충돌 상황에서 민간인 또는 민간 물자에 대한 고의적인 폭력 행위는 이미 국제인도법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므로 이를 '테러'라고 묘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의미도 없다.

더욱이 국제인도법은 테러리즘 "조치"와 "테러 행위"를 특별히 금지하고 있다. 제4제네바협약 제33조는 "집단적 징벌 및 이와 유사한 모든 협박 또는 테러 행위 조치는 금지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제2추가규정서 제4조는 적대행위에 가담하지 않거나, 더 이상 가담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테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주요 목적은 개인이나 민간인 대중은 특히 공포심을 불러오는 집단적 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데 있다. "민간인 대중 사이에 공포를 확산시키기 위한 폭력행위 및 그 위협은 금지된다" (제1추가규정서 제51조 제2항, 제2추가규정서 제13조 제2항). 이들 규정은 군사 목표물에 대한 적법한 공격으로써 민간인 사이에서 공포를 확산시키는 경우를 금지하지 않으나 특별히 민간인을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격으로서, 예를 들어 도심지역 민간인을 상대로 포격하거나 저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국제인도법은 무력충돌 시에만 적용되므로 평시에 행해지는 테러 행위는 규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법(즉, 국내법 및 국제법, 특히 인권법)의 적용을 받는다. 범인의 범행 동기를 불문하고 무력충돌 밖에서 행해지는 테러 행위는 국내적 또는 국제적 법 집행기관이 대응하고 있다. 국가는 테러 행위를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해 정보 수집, 경찰 및 사법 공조, 범인 인도, 형사 제재, 금융 조사, 자산 동결 또는 테러 용의자 지원 혐의를 받고 있는 국가에 대한 외교적 및 경제적 압박 등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소위 ‘테러와의 전쟁’은 무엇인가?

‘테러와의 전쟁’은 테러 공격을 방지하고 이에 대항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조치와 작전을 설명하는 용어이다. 이러한 조치에는 정보 수집, 금융 제재, 사법 공조 등이 포함되며 무력충돌도 포함될 수 있다. ‘테러와의 세계 전쟁’으로 불리는 행위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는 상당한 논란을 불러왔다. 특정 국가에서 이러한 용어가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국제인도법에 비추어 이것이 수사적 기교인지 법적 의미에서 세계적 무력충돌을 의미하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ICRC는 이용 가능한 사실에 기초하여, 현재 세계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흔히 ‘테러와의 전쟁’이라고 불리는 폭력 상황의 법적 분류에 대해서는 사례별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폭력의 수준이 국제적이든 비국제적이든지 무력충돌 수준에 육박하는 경우 국제인도법을 적용할 수 있다(질문 5 참조). 국제인도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법체계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2001년 9월 11일 미국에 대한 공격 이후 시작된 테러리즘에 대한 투쟁 중 어떤 부분들은 국제인도법에서 정의하는 무력충돌에 해당된다. 일례로 미국 주도의 연합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2001년 10월 시작한 전쟁을 들 수 있다. 제네바 제협약과 관습국제법 규칙은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과 아프가니스탄 사이에 벌어진 국제적 무력충돌에 완전히 적용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테러’라고 묘사되는 세계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폭력은 기껏해야 공통된 이념을 공유하는 느슨하게 조직된 단체(네트워크) 또는 개인이 행하고 있다. 이들 단체 및 네트워크를 어떤 유형의 무력충돌이든지 간에 그 충돌의 당사자로 분류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

‘테러리즘’은 하나의 현상이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현상에 대적해 전쟁할 수는 없으며, 전쟁은 확인 가능한 무력충돌 당사자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테러와의 전쟁’보다는 다면적인 ‘테러리즘에 대한 투쟁’이라고 하는 것이 더욱 적절할 것이다.

테러리즘에 대한 투쟁에서 구금된 사람에게는 어떤 법이 적용되나?

1. 테러리즘에 대한 투쟁의 일환으로 벌어진 국제적 무력충돌(예: 2002년 6월 신정부 수립까지의 아프가니스탄의 경우)과 관련해 구금된 사람들은 국제적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국제인도법의 보호를 받는다.

가) 생포된 전투원에게는 포로의 지위를 부여해야 하며 해당 국제적 무력충돌의 적극적인 적대행위가 끝날 때까지 억류할 수 있다. 포로는 적대행위에 가담한 사실만으로 재판받지 않으나 그가 범한 전쟁범죄에 대해서는 재판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언도된 형기를 채울 때까지 억류될 수 있다. 재소자의 포로 지위가 불확실한 경우 권한 있는 재판소를 설치하여 이 문제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나) 긴급한 안보상의 이유로 구금된 민간인은 제4제네바협약에서 명시한 보호를 제공받아야 한다. 포로 지위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전투원(예: 공개적으로 무기를 소지하지 않은 자) 또는 국제적 무력충돌 시 적대행위에 직접 가담한 민간인(소위 '비특권' 또는 '불법' 교전자)은 적국 국민인 경우 제4제네바협약의 보호를 받는다. 포로와는 달리 이러한 사람들은 무기 소지뿐만 아니라 이들이 범했을 수도 있는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하여 억류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재판받을 수 있다. 또한 언도된 형기를 복역할 때까지 억류될 수 있다. 기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억류로 이어진 긴급한 안보상의 이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

2. 테러리즘에 대한 투쟁의 일환으로 벌어진 비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해 구금된 사람들은 공동 제3조와 제2추가규정서 (적용 가능시) 그리고 관련 관습국제인도법 규칙의 보호를 받는다. 인권법 및 국내법도 적용된다. 그들이 범했을 수도 있는 범죄로 재판받는 경우 국제인도법과 인권법에 따라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3. 테러리즘에 대한 투쟁 중 무력충돌의 영역 밖에서 구금된 모든 사람은 구금 국가의 국내법과 인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그들이 범했을 수도 있는 범죄로 재판받는 경우 이들 법체계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보장받아서 보호받는다.

테러리즘에 대한 투쟁에서 생포된 그 어떤 사람도 법의 영역 이외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법적 보호에 있어 '블랙홀'은 없다.



19. 국제인도법은 어떻게 이행되나?

국제인도법의 이행, 즉 규칙을 행동으로 옮길 책임은 제1차적으로 제네바 제협약과 그 추가의정서의 당사국들에게 있다. 모든 상황에서 국가는 제협약을 존중하고 존중되도록 해야 한다는 4개 제네바협약의 공통 제1조에 이러한 책임이 명시되어 있다.



일부 이행 방법으로서, 법 또는 규제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 군과 일반 대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요원의 채용 및/또는 훈련, 신분증 및 기타 문서 제작, 특별 조직의 설치, 기획 및 행정 절차의 도입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국가는 법의 위반을 방지하고 위반 시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처벌해야 한다.

예방, 감시 및 억제

국가는 평시와 무력충돌 시 모두 국제인도법이 완전히 준수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특정한 법적 및 실무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국제인도법 조약도법이 준수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수많은 장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칙과 장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1. 예방적 조치

- 국제인도법에 대한 지식 전파 (국제인도법의 보급)
- 국제인도법 조약을 국가별 언어로 번역
- 국제인도법이 준수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시 국제인도법을 국내법으로 변형하고, 관련 입법 및 조문의 채택
- 국제인도법 이행 촉진을 위한 인력 훈련 및 군 내 법률자문관 임명
- 전쟁범죄 방지 및 이를 범한 자들의 처벌
- 적십자, 적신월, 적수정 표장이 존중되도록 보장

2. 분쟁 기간 동안 국제인도법 준수를 감시하기 위한 조치 및 장치

- **이익보호국 또는 그 대리** – 이익보호국은 적국에서 충돌 당사자와 그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명된 중립국이다. 이익보호국의 역할은 피해자를 원조하기 위한 구호 및 보호 활동을 수행하고 국제인도법 준수를 감독(예: 포로 또는 민간인 피억류자 방문)하는 것이다. ‘공정과 효율성을 전적으로 보장’하는 국제기구인 이익보호국을 대신할 수 있다.
- **심문 절차** – 충돌 당사자의 요청이 있고 관계 당사자들이 해당 절차 이행에 동의한 경우 위반 혐의에 대하여 심문을 개시해야 한다.
- **국제인도주의사실조사위원회** – 제1차추가외정서의 제90조에 따라 설립된 본 위원회는 제네바 제협약 또는 제1추가외정서의 중대한 위반 혐의 또는 기타 심각한 위반에 대하여 심문하고 위원회의 주선을 통하여 제네바 제협약에 대한 존중 회복을 촉진할 수 있다. 위원회의 공식 권한은 국제적 무력충돌 상황에만 적용되나, 위원회는 당사자들이 동의할 시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된 조사를 수행할 의향을 표명한 바 있다.
- **유엔과의 협력** –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이 발생한 경우, 제네바 제협약과 추가외정서의 당사국은 유엔과 협력하여 유엔헌장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 **ICRC** – 제네바 제협약, 추가외정서 및 국제적십자운동 정관에 의해 ICRC에 부여된 임무에 따라 ICRC는 감시 절차에 있어 핵심 구성원 역할을 한다.

3. 억제 조치

억제 조치는 모든 위반을 방지하고 중단해야 하는 충돌 당사자의 의무에 기반을 둔 것이다. 관련 의무에는 특히 다음이 포함된다.

- 국가가 국내 기소를 통해 전쟁범죄로 간주되는 위반행위를 억제할 의무
- 군 지휘관이 제네바 제 협약 및 추가의정서의 위반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처벌 조치를 개시할 의무
- 상급자가 자신의 권한 내에서 실현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 국제인도법 위반을 방지하거나 억제하지 못한 경우 그러한 상급자가 형사 및 징계 책임을 부담하도록 해야 할 국가의 의무
- 형사 사건에 대하여 국가 간 상호 지원을 제공할 의무

이들 조치는 위반에 대한 중요한 억제책이다(질문 21 보기).

무력충돌 시 고통을 유발하는 주요인은 규칙의 결함 혹은 부존재 때문이 아니라 수단 혹은 정치적 의지의 결여이든, 발효된 법을 존중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 간 심각한 국제인도법 위반을 범한 이들을 기소하고 처벌하기 위한 형사법 절차의 개발이 강조되어왔으나 위반 발생 시 이를 중단시키고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여전히 없는 상황이다. 국제인도법에서 규정한 대부분의 절차는 실제로는 적용된 적이 없거나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더욱이 이러한 절차는 국제적 무력충돌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일부 감시장치 및 이행장치가 국제인도법의 영역 밖에서 개발된 점은 사실이지만, 그 한계가 존재한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ICRC는 국제인도법 준수를 감시하고 준수를 보장할 장치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믿는다(그림 20).



20. 국제인도법의 발전 및 존중 보장에 있어 ICRC의 역할은 무엇인가?

ICRC는 국제인도법의 수호자이자 옹호자로서 무력충돌 및 기타 폭력 상황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며 국제인도법에 대한 존중을 함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박스 보기) 주로 국제인도법에 대한 지식을 확산시키고, 국내 수준에서 국제인도법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국제인도법의 준수를 감시함과 동시에, 충돌 당사자들에게 그들의 의무를 상기시킴으로써 국제인도법에 대한 존중을 촉진시키고 있다. ICRC는 또한 국제인도법을 발전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Vladimir Nelenk/ICRC

ICRC의 임무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공평하고 중립적이며 독립적인 기관으로, ICRC의 사명은 전적으로 인도적인 것으로서 무력충돌과 기타 폭력 사태 피해자의 생명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ICRC는 또한 인도법과 보편적인 인도주의 원칙을 증진하고 강화하여 사람들의 고통을 예방하고자 노력한다.

1863년에 설립된 ICRC는 제네바협약과 국제적십자운동의 기원이기도 하다. ICRC는 무력충돌 및 기타 폭력 사태 발생 시 국제적십자운동의 구성원들이 수행하는 국제 활동을 지휘하고 조정한다.”

보호 활동

무력충돌 및 기타 폭력 상황 중 사람들을 보호하는 ICRC의 활동은 관련 법이 완전히 존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CRC는 물리적으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없다. 대신 이들이 노출된 위험을 최소화하고 이들에 대한 학대를 방지하고 종식시키며, 이들의 권리에 주목하도록 하고, 이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다시 말해 ICRC는 국제인도법 준수를 감시하고 관련 당국에 위반 내역을 보고한다. 보호 활동에는 구금 관련 활동(구금시설 방문, 구금 여건 평가 등), 민간인 대중의 보호 및 가족 찾기 활동 등이 있다.

지원 활동

ICRC 지원의 목표는 무력충돌 또는 기타 폭력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 또는 공동체의 생명을 보호하고/또는 존엄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지원활동은 주로 국제인도법 위반의 결과에 대한 대응이며 위험 노출을 줄임으로써 이러한 위반의 원인과 정황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지원 활동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식량 또는 의약품 제공에서부터 수도 또는 의료 시설의 복구 및 일차 간호요원, 외과 의사 및 의사숙/보조기 기술자의 훈련 등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역량 개발 등 다양한 활동을 아우른다.

국제적십자적신월운동의 정관은 ICRC의 역할을 특히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제네바 제협약에 따라 부여된 임무에 착수하고, 무력충돌 시 국제인도법이 충실히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그 법의 위반 혐의에 근거한 모든 항의를 인지한다.” (제5조 제2항(C))

“무력충돌 시 적용 가능한 국제인도법 지식을 이해시키고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며 국제인도법의 모든 발전에 준비한다” (제5조 제2항 (G))

법의 보급 및 이행

법에 대한 무지는 이를 존중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 이 때문에 ICRC는 국가들에게 국제인도법을 널리 전파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해 국제인도법이 교육 과정, 군사 훈련 및 대학 교과목에 포함되도록 장려하고 있다. ICRC는 그 밖에도 국가는 인도법을 국내 수준에서 이행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 ICRC는 주로 국제인도법에 대한 자문 서비스(Advisory Service on IHL)를 통해 국가들에게 기술적인 측면의 지침을 제공하고 당국이 국내 이행 법과 규정을 채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국제인도법에 대한 존중 감시 및 교전 당사자에 의무 상기

4개 제네바협약과 이에 대한 추가의정서에 따라서 ICRC는 무력충돌 시 이행할 특별한 임무를 부담한다. 국제적 무력충돌 시 ICRC는 포로와 민간인 피억류자의 대우 및 구금 조건이 국제인도법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이들을 방문할 권리를 가진다. 피구금자에 대한 정보는 피구금자가 실종되지 않도록 ICRC의 중앙심신기관에 전달되어야 한다. ICRC는 또한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식량, 의약품, 의복 배송 등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한다.

국제인도법 조약에 따라 부여된 임무 외에도 ICRC는 주도적으로 행할 수 있는 권리가 넓다(공통 제3조, 제1, 2, 3 제네바협약 제9조, 제4제네바협약의 제10조 참조). ICRC는 충돌 당사자에게 항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ICRC는 또한 무력충돌의 수준에 미치지 않으나 인도주의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국제적십자운동 정관에서 인정하는 권리를 주도할 수 있다. 국제인도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ICRC는 관련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 한도에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국제인도법 위반 발생 시 ICRC는 보호 및 지원 사업에서 도출해낸 결론을 바탕으로 관련 당국에 비공개로 항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기밀성은 ICRC의 주요 활동 방법 중 하나이며, 중립과 공평의 원칙에서 직접적으로 파생된 오랜 ICRC의 정책이자 실무이다. 이로써 ICRC는 무력충돌 당사자 및 기타 이해당사자들과 건설적인 대화를 유지하고, 분쟁 지역, 구금장소, 무력충돌 및 기타 폭력 상황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확보하고, 수해자와 직원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충돌 당사자에 대한 양자 간 의견 표시를 비공개로 하는 것은 국제인도법 위반과 폭력 상황에서 사람들을 보호하는 기타 기본 규칙의 위반을 종식시키고 그러한 위반 행위의 발생을 방지하는데 있어 ICRC가 선호하는 행동방식이다. 그러나 이런 행동방식은 다른 활동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ICRC는 다음의 경우 국제인도법에 대한 특정 위반을 공개적으로 비난할 권리를 갖는다. (1) 위반이 중대하고 반복되고 있거나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요원들이 위반을 직접 목격했거나 그러한 위반의 존재와 정도가 믿을 수 있고 확인 가능한 출처를 토대로 규명된 경우, (3) 양자 간 비공개 의견 표시 및 인도적 동원 노력(즉, 제3자에게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충돌 당사자의 행동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요청하는 것)을 시도했으나 위반 종식에 실패한 경우, (4) 그러한 홍보가 피해 또는 위협을 받은 사람 또는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국제인도법의 발전

국제인도법을 발전시키는 조약들은 국가가 채택한다. ICRC 또한 국제적십자운동 정관에 따라 국제인도법의 “모든 발전을 준비”할 임무가 있다. 이러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ICRC는 주로 외교 회의에 제출하기 위한 초안 문서를 준비한다. 예를 들어 제네바 제협약의 첫 번째 초안은 국가들과의 상의하여 ICRC가 작성하였으며, 후일 외교회의에 제출되어 추가 논의와 수정을 거친 후 최종

채택되었다. ICRC는 또한 새로운 규칙에 합의할 가능성 또는 국제인도법 강화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국가 및 기타 이해당사자와 협의를 진행한다. 예를 들어 제31차 국제적십자 전체회의 및 제1결의안 “무력충돌 피해자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링크: <http://www.icrc.org/eng/resources/documents/resolution/31-international-conference-resolution-1-2011.htm>) 채택 후 ICRC는 구금 분야에서 국제인도법을 강화하고 국제인도법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들과 협의했다(질문 10과 19 참조).





Christopher Scott/ICRC

21. 전범 용의자는 국제법에 따라 어떻게 기소되나?

전쟁범죄는 국제적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 시 범해지는 심각한 국제인도법 위반이다. 전쟁범죄의 정의 및 목록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뉘른베르크에 설치된 국제군사재판소의 규정, 제네바 제협약과 추가의정서, 구유고 전범재판소와 르완다 전범재판소의 규정 및 판례법, 국제형사재판소의 로마규정 및 기타 국제적 또는 '혼합' 재판소 등에서 찾을 수 있다.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제8조는 국가들이 조약 형태로 작성한 전쟁범죄 목록을 담고 있다. 이 목록은 관습국제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국가가 심각한 국제인도법 위반으로 간주하는 행동에 대한 유용한 지침이 되기도 한다. 여러 국가의 법과 판례법도 전쟁범죄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고 있다.

전쟁범죄란?

다음 행동은 전쟁범죄로 분류된다.

- 피보호인(예: 부상을 입었거나 병든 전투원, 포로, 민간인)의 고의적 살인
- 피보호인에 대한 고문 또는 비인간적인 대우
- 피보호인에 대하여 고의로 심한 고통이나 상해를 가하는 것
- 민간인 대중에 대한 공격
- 불법적인 국외 추방 또는 이송
- 금지된 무기 또는 전쟁 방법의 사용
- 적십자 및 적신월 표장 또는 기타 보호 표지의 부적절한 사용
- 적국 또는 적군에 속한 개인을 배신을 통해 상처를 입히거나 살해하는 것
- 공공재산 또는 사유 재산의 약탈

비국제적 무력충돌에 대한 국제인도법 조약은 심각한 국제인도법 위반을 범죄화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나 현재 관습국제법에 따른 전쟁범죄의 개념이 비국제적 무력충돌 시 범해진 심각한 위반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관습국제인도법에 대한 ICRC의 연구 규칙 156 및 로마규정 제8조 2항 c), d), e), f) 참조)

반인도적 범죄와 집단살해는 무엇인가?

국제법은 반인도적 범죄와 집단살해 같은 유형을 범죄로서 인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반인도적 범죄는 민간인 대중에 상대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환으로서, 그러한 공격 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범하는 잔혹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잔혹 행위에는 살인, 몰살, 노예화, 국외 추방, 투옥, 고문, 강간, 다양한 이유를 바탕으로 한 박해 등이 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규정에 따라 집단살해죄는 “국민, 민족, 인종 또는 종교 집단의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려는 의도로 행하여진” 다양한 행동을 포함한다. 문제 되는 행위는 아래와 같다. 가) 집단 구성원의 살해, 나) 집단 구성원에 대하여 가하는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 다) 집단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로 신체적 파괴를 초래할 의도에서 고의로 부과하는 생활 조건, 라)

집단 내 출생을 제한하기 위하여 의도된 조치의 부과, 마) 한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 아동의 강제적 이동

국가의 의무: 전범 혐의자의 기소 또는 인도

제네바 제협약 또는 제1추가의정서의 당사국이 되는 순간, 국가는 제협약과 의정서의 '중대한 위반'으로 알려진 죄를 범한 사람을 처벌하는데 필요한 법 제정에 착수해야 한다. 또한 국가는 중대한 위반을 범한 것으로 의심받는 누구든지 자국 법원에 기소하거나 다른 국가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이송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국내 형법은 자국 내 영토에서 범했거나 자국민이 범한 범죄에만 적용되나, 국가들이 영토 밖에서 행한 범죄를 자국 법원에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제인도법에 따라 국가는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을 범한 사람은 누구든지 국적 또는 범죄 발생지에 상관없이 찾아내서 처벌해야 한다. 보편적 관할권(universal jurisdiction)으로 알려진 이 원칙은 중대한 위반이 효과적으로 억제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보편적 관할권은 다른 국가에서 국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한 국가의 법원에서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국내법에 대한 국제법적 기반이 된다.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 즉 중대한 위반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전쟁범죄에 대한 형사 소송 절차는 일부 경우 국가 당국이 개시해야만 한다. 관습국제인도법에 대한 ICRC의 연구는 자국민 또는 자국군, 또는 영토 내 다른 사람이 범했다는 혐의가 있는 전쟁 범죄뿐만 아니라 국가가 관할권을 가진 기타 전쟁범죄의 경우 국가가 이를 조사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국가는 적절한 경우 전범 용의자를 기소할 의무가 있다.

국제재판소의 역할은 무엇인가?

로마규정에 따라 국가들이 설립한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는 2002년 7월 1일 출범했다. 재판소 설립은 전쟁범죄, 집단살해, 반인도적 범죄 및 침략범죄가 처벌되지 않는 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투쟁을 통해서 얻은 중대한 성과를 상징한다. 물론 전범 용의자 기소에 대한 제1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으나,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 성립 기준이 충족될 경우, 국내 법원이 기소할 의향이 없거나 능력이 없다면 재판소가 행동할 수 있다.

국제형사재판소 이전에 구유고전범재판소(ICTY)와 르완다 전범재판소(ICTR)는 1993년과 1994년 이들 국가의 내전 시 전쟁범죄를 범했다는 혐의를 받는 사람들을 재판하기 위해 유엔안보리가 설치하였다. 2010년 12월 22일 안보리가 설치한 전범재판소잔여업무처리기구(Mechanism for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s)는 ICTY와 ICTR이 임무를 완수한 후 이들 재판소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그 성과를 유지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전쟁범죄를 형사적으로 억제하는 작업은 캄보디아, 동티모르, 시에라리온 등의 국가에 설치된 여러 '혼합' 또는 특별법원에서 점점 더 많이 수행하고 있다. 혼합법원은 국내 재판관할권과 국제 재판관할권의 요소를 모두 갖고 있다.

국제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이 질문에는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법에 대한 무지가 가장 큰 원인이라거나, 전쟁의 필연적인 결과라거나, 또는 국제법(국제인도법 등)에는 제재를 위한 효과적이며 중앙 집중화된 체제가 없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 사실상, 전시와 평시 모든 상황에서 그리고 국내적인지 국제적인지에 상관없이 법은 위반되고, 범죄는 발생한다. 그렇다고 해서 국제인도법 위반이라는 현실에 굴복하고 해당 법제가 더욱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무력충돌 피해자들을 운명에 맡기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위반을 끊임없이 규탄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며 위반을 한 사람들을 처벌해야 한다. 전쟁범죄를 형사적으로 억제하는 것은 국가적 수준이든 국제적 수준이든 국제인도법을 이행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임무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공평하고 중립적이며 독립적인 기관으로, ICRC의 사명은 전적으로 인도적인 것으로서 무력충돌과 기타 폭력 사태 피해자의 생명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ICRC는 또한 인도법과 보편적인 인도주의 원칙을 증진하고 강화하여 사람들의 고통을 예방하고자 노력한다. 1863년에 설립된 ICRC는 제네바협약과 국제적십자운동의 기원이기도 하다. ICRC는 무력충돌 및 기타 폭력 사태 발생 시 국제적십자운동의 구성원들이 수행하는 국제 활동을 지휘하고 조정한다.



ICRC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
ANSWERS TO YOUR QUESTIONS